

마이스(MICE) 안전관리 매뉴얼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Contents

I

서론

서론 6

1. 개발 배경
2. 적용대상 및 안전관리 범위
3. 매뉴얼 구성 및 체계
4. 매뉴얼 활용 가이드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A. 공통 체크리스트 16

1. 인명안전
2. 보건위생
3. 손실예방
4. 재난재해
5. 법 규정

B. 내용별 체크리스트 30

1. 참가자 관리
2. 행사장 조성 및 임시구조물 공사
3. 행사 운영
4. 관광·수송 및 숙박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A. 공통부문 43

- | | |
|----------------------|------------------|
|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조직구성 | 10. 위험 전가 |
| 2.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배정 | 11. 보안계획 |
| 3. 안전위험 및 점검 | 12. 보안인력 및 장비 |
| 4. 작업장 안전요소 | 13. 사고처리 절차 |
| 5. 화재 점검 및 예방 | 14. 재난재해 |
| 6. 응급의료 | 15. 비상사태 관리 |
| 7. 공중보건 및 위생시설 관리 | 16. 법적 책임과 규정 준수 |
| 8. 손실예방 | 17. 산업안전 및 보건 |
| 9. 우발사태계획 | 18. 차별금지 의무 |

B. 업무부문 78

- 19. 행사장소 선정
- 20. 옥외행사장 선정 및 설계
- 21. 전시부스 설치 및 시공
- 22. 구조물·무대·시스템 설계 및 시공
- 23. 프로그램의 안전성
- 24. 행사장 시설
- 25. 운영인력
- 26. 군중 관리
- 27. 참가자 동선 및 입·퇴장 관리
- 28. 행사장 주변 관리
- 29. 편의 서비스 및 폐기물 관리
- 30. 식음료 서비스
- 31. 관광 및 수송
- 32. 관광 체험활동
- 33. 숙박 관리

C. 법률부문 101

- 34. 산업안전보건법(1,2,3)
- 35. 중대재해처벌법(1,2,3)
- 3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37. 민법(공작물책임)
- 3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9. 공연법
-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41. 개인정보보호법
- 42.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 43. 저작권법

IV

안전사고 사례 122

안전사고 사례

V

참고 양식 136

참고 양식

- 1. MICE 안전관리계획(안)
- 2. MICE 안전관리 전담조직(TF) 구성표
- 3. MICE 안전관리 회의록
- 4. MICE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 5. MICE 행사 사고보고서



I 서론

1. 개발 배경
2. 적용대상 및 안전관리 범위
3. 매뉴얼 구성 및 체계
4. 매뉴얼 활용 가이드

I. 서론

1. 개발 배경

- 정부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였다.
- 또한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였다.
- 더구나 최근 이태원 참사와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다양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안전 경각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 이에 MICE 행사 주최자도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고, MICE 조직의 자산 보호와 손실 예방을 위하여 MICE 행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 본 매뉴얼은 MICE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자는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전한 MICE 행사를 개최·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도록 하였다.

2. 적용대상 및 안전관리 범위

- 본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에 해당하는 MICE 행사이다.
- MICE 행사를 개최하는 정부, 지자체, 협회, 단체, 기업 등 주최자는 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매뉴얼의 내용을 적용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모든 주최자는 MICE 행사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체 예산 내에 ‘안전관리비’를 산정하고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 MICE 행사는 기본적으로 행사장에 설치된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연법」, 「경비업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사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 개별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공연 등의 경우, 그 법령에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기준이 있을 때는 그 기준에 따르며, 없을 시에는 본 매뉴얼을 적용한다.
- 본 매뉴얼은 다양한 MICE 행사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은 물론 유·무형의 자산 보호 및 손실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MICE 행사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본 매뉴얼에서 다루는 안전에 대한 범위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참가자의 신체적·정신적 사고나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MICE 조직의 자산에 피해나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 MICE 행사의 개최 및 운영이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기타 MICE 행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법령 요약]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그 외의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
- 영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1천명 이상, 개최장소가 산·수면, 사용재료가 불·폭죽·석유류·가연성가스 등 폭발성 물질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 지자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전 청취

2.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함. 안전보건계획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중대재해처벌법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
-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함

4. 공연법

-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영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변경 : 7일 전)

I. 서론

5. 경비업법

- 영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시·도경찰청장은 행사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 실시, 부득이 경비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 통지 요청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4조(차별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함
- 단,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함

7. 개인정보보호법

-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에 활용하지 못함
- 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3. 매뉴얼 구성 및 체계

- '매뉴얼'이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통제 수단이라면 '체크리스트'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매뉴얼에서 제시된 기준을 질문 형식으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일종의 질문서이다.
- 본 매뉴얼은 MICE 안전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질문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질문의 이유와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체크리스트와 연결되는 '매뉴얼'에 담겨 있다. 따라서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체크리스트를 통해 MICE 안전대책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는 모든 MICE 행사에 적용하는 '공통 체크리스트'와 MICE 행사의 세부 분야에 적용하는 '내용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 * 내용별 체크리스트: 참가자 관리, 행사장 조성/임시구조물 공사, 행사운영, 관광·수송 및 숙박
- 체크리스트 활용 시, 공통/내용별 체크리스트의 확인 표기를 '예', '아니오', '해당 없음'으로 구분하여 해당 MICE 행사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중요**로 표기된 체크리스트 항목은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4. 매뉴얼 활용 가이드

1) 매뉴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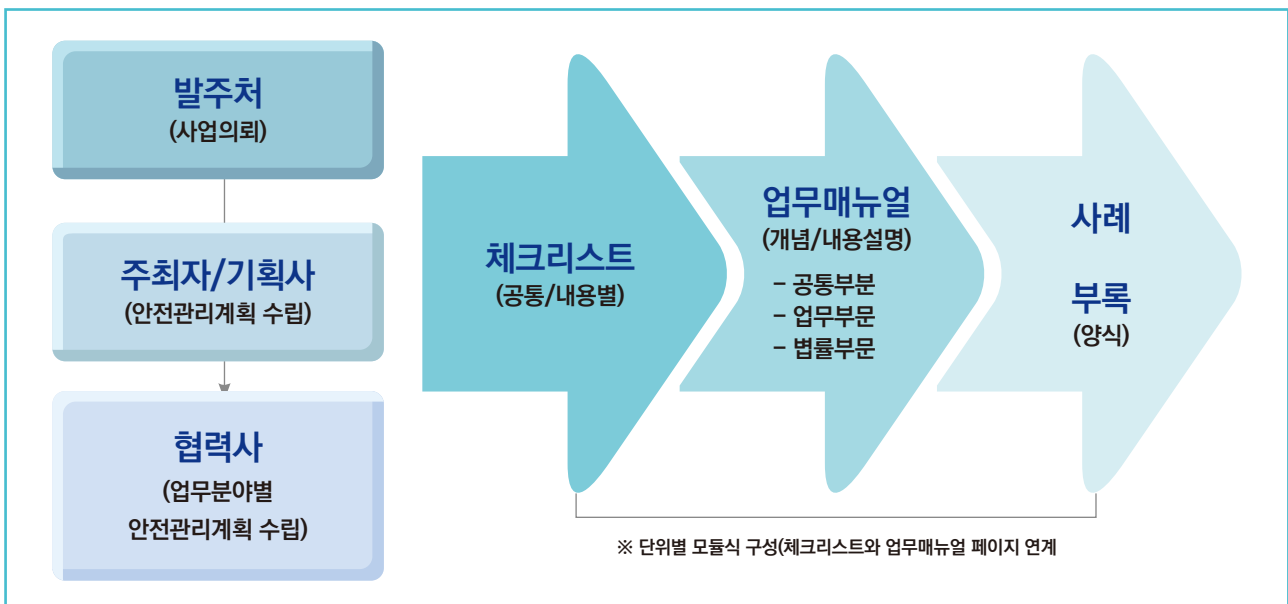
- 회의,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 등 MICE의 분야별 속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 각 체크리스트와 해당 매뉴얼을 바로 연계하여 체크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확인할 수 있어 현업 실무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 매뉴얼 항목에 '안전관련 법규, 사례, 참고사항 등'을 추가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 안전관리와 관련한 '참고 양식'을 개발하여 현업에 직접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하였다.

2) 매뉴얼 프로세스

- MICE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 MICE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 본 매뉴얼의 '체크리스트' 점검 → '아니오'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에 추가/보완

- ① MICE 행사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공통/내용별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하기
- ② 질문 형식의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라 체크(예, 아니오, 해당 없음)한 후, 이에 연계된 해당 매뉴얼 페이지를 따라 체크리스트의 세부 설명을 참고하기
- ③ 안전사고 사례, 관련 법 규정 등을 확인하고, 추가/보완사항을 해당 MICE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완성하기



I. 서론

4. 재난재해				
(2) 비상대응				
A-4-2-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행사장의 내·외부, 주변 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였는가?	예	아니오	매뉴얼 No. 14 15 19
A-4-2-2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내부 보고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였는가? · 업무흐름도, 연학당, 장내방송 등	예	아니오	매뉴얼 No. 14 15
A-4-2-3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외부 관련 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 소방서, 경찰서, 119구급차 등	예	아니오	매뉴얼 No. 14 15
A-4-2-4	행사장 및 시설 내에 '비상 대피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거나 참가자에게 안내하였는가?	예	아니오	매뉴얼 No. 14 15 24
A-4-2-5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참가자의 '대피 공간 또는 장소'를 확보하였는가?	예	아니오	매뉴얼 No. 14 15
A-4-2-6	해당 MICE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게 비상대응 방안에 대하여 지침을 안내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매뉴얼 No. 14 15 25
<p>[체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사태 관리는 비상사태를 선조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서, MICE 조직과 참가자의 적절한 대응능력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비상대피(EAP, Emergency Action Plan)은 MICE 주최자와 기획사가 비상 대응 당국에 신속 효과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법, 대피자를 위한 집결 구역의 지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상 방송시스템의 사용, 현장 의료실 배치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14. 재난재해																	
<p>(1) 체크리스트 항목</p> <p>A-4-1-1. 행사 기간 중 감염병의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A-4-1-2. 행사 기간 중 기상학적 재난의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A-4-1-3. 행사 기간 중 사회적 재난의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p>																	
<p>(2) 내용 설명</p> <p>가) 재난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인명 손실의 원인이 되고 인간복지에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어,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고 재산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국가나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만드는 외도나 능력을 말함 위험은 자연적, 인공적, 기술적 위험을 포함하여 행사장의 장소, 시기, 활동, 참가자와 관련된 위험은 급작스럽게 또는 천천히 나타날 수 있으며,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상당한 시간 또는 짧은 시간에 걸쳐 발생할 수도 있음 위험은 행사장, 행사장의 인접 지역 또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지 행사장 접근이나 참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위험은 대역량의 자연재해로부터 기상정보의 기술적 오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검토되어야 함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인본위를 감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극심한 변동은 서비스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어, 심지어 MICE 행사가 취소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p>나) 자연재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위험요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생물학적</td> <td>· 질병 (코로나19, SARS, MERS, 전염병, 한파병, 유행성 출혈, 구제역, 광견병)</td> </tr> <tr> <td>· 감염 (동물, 균류)</td> </tr> <tr> <td rowspan="3">지질학적</td> <td>· 지진</td> </tr> <tr> <td>· 산사태, 갑류사태, 지반침하, 핵안정성, 눈사태</td> </tr> <tr> <td>· 쓰나미 (tsunami) 등</td> </tr> <tr> <td rowspan="4">기상학적</td> <td>· 폭설/한파/급격스콜거나 지속되는 여우 또는 추위</td> </tr> <tr> <td>· 화재 (올, 산적, 도시)</td> </tr> <tr> <td>· 홍수 (강, 돌발 홍수, 조수가 밀려들)</td> </tr> <tr> <td>· 배 또는 뇌우 (산동, 번개, 폭우)</td> </tr> <tr> <td>· 눈 (눈보라, 얼음, 우박, 진눈개비)</td> </tr> <tr> <td>· 폭풍 (열대성 저기압, 태풍, 강풍, 먼지/모래 폭풍)</td> </tr> </tbody> </table>		구분	위험요인	생물학적	· 질병 (코로나19, SARS, MERS, 전염병, 한파병, 유행성 출혈, 구제역, 광견병)	· 감염 (동물, 균류)	지질학적	· 지진	· 산사태, 갑류사태, 지반침하, 핵안정성, 눈사태	· 쓰나미 (tsunami) 등	기상학적	· 폭설/한파/급격스콜거나 지속되는 여우 또는 추위	· 화재 (올, 산적, 도시)	· 홍수 (강, 돌발 홍수, 조수가 밀려들)	· 배 또는 뇌우 (산동, 번개, 폭우)	· 눈 (눈보라, 얼음, 우박, 진눈개비)	· 폭풍 (열대성 저기압, 태풍, 강풍, 먼지/모래 폭풍)
구분	위험요인																
생물학적	· 질병 (코로나19, SARS, MERS, 전염병, 한파병, 유행성 출혈, 구제역, 광견병)																
	· 감염 (동물, 균류)																
지질학적	· 지진																
	· 산사태, 갑류사태, 지반침하, 핵안정성, 눈사태																
	· 쓰나미 (tsunami) 등																
기상학적	· 폭설/한파/급격스콜거나 지속되는 여우 또는 추위																
	· 화재 (올, 산적, 도시)																
	· 홍수 (강, 돌발 홍수, 조수가 밀려들)																
	· 배 또는 뇌우 (산동, 번개, 폭우)																
· 눈 (눈보라, 얼음, 우박, 진눈개비)																	
· 폭풍 (열대성 저기압, 태풍, 강풍, 먼지/모래 폭풍)																	
<p>2) 중증 급성호흡기중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시스-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호흡기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8,098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이 사망하였다.</p> <p>3) 중동 호흡기중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SARS와 유사한 바이러스다.</p> <p>4) MICE 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하여 행사장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큰 파도를 말하며, 쓰나미의 명칭은 항구에 붙어 있던 비정상적인 높은 파도를 가리키는 일본어에서 비롯되었다.</p>																	

3) 이해관계자별 매뉴얼 활용

- 주최자, 기획사, 협력업체는 MICE 행사의 기획단계 또는 실행단계에서 예상되는 안전관리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MICE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본 매뉴얼을 계획 수립의 사전 또는 사후에 활용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다.
- 기획사 및 협력업체는 주최사와 공동으로 해당 업무 범위와 관련한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검토·협의하여 사전 안전대책 수립 시 본 매뉴얼을 활용하고, 실행단계에서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정부, 기관, 지자체는 MICE 행사의 유형에 따라 행사의 주최자가 되기도 하고 후원 또는 협력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행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소제공자는 주최자가 준비하는 MICE 행사에 따라 자체 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안전관리 항목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며, 주최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자 용어 설명

- 주최자
MICE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조직으로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협회·단체, 기업, 조직위원회 등이 해당한다.
- 발주처
주최자가 MICE 행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외부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주최자는 발주처가 된다.



- 기획사

발주처(주최자)로부터 MICE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실질적인 업무를 기획, 준비,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PEO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여행사, 이벤트기획사 등을 말한다.

- 장소제공자

MICE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특정 장소 및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 협력업체

기획사로부터 MICE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하도급을 받은 자로서 수급업체, 시공업체, 하청업체, 공급업체, 서비스업체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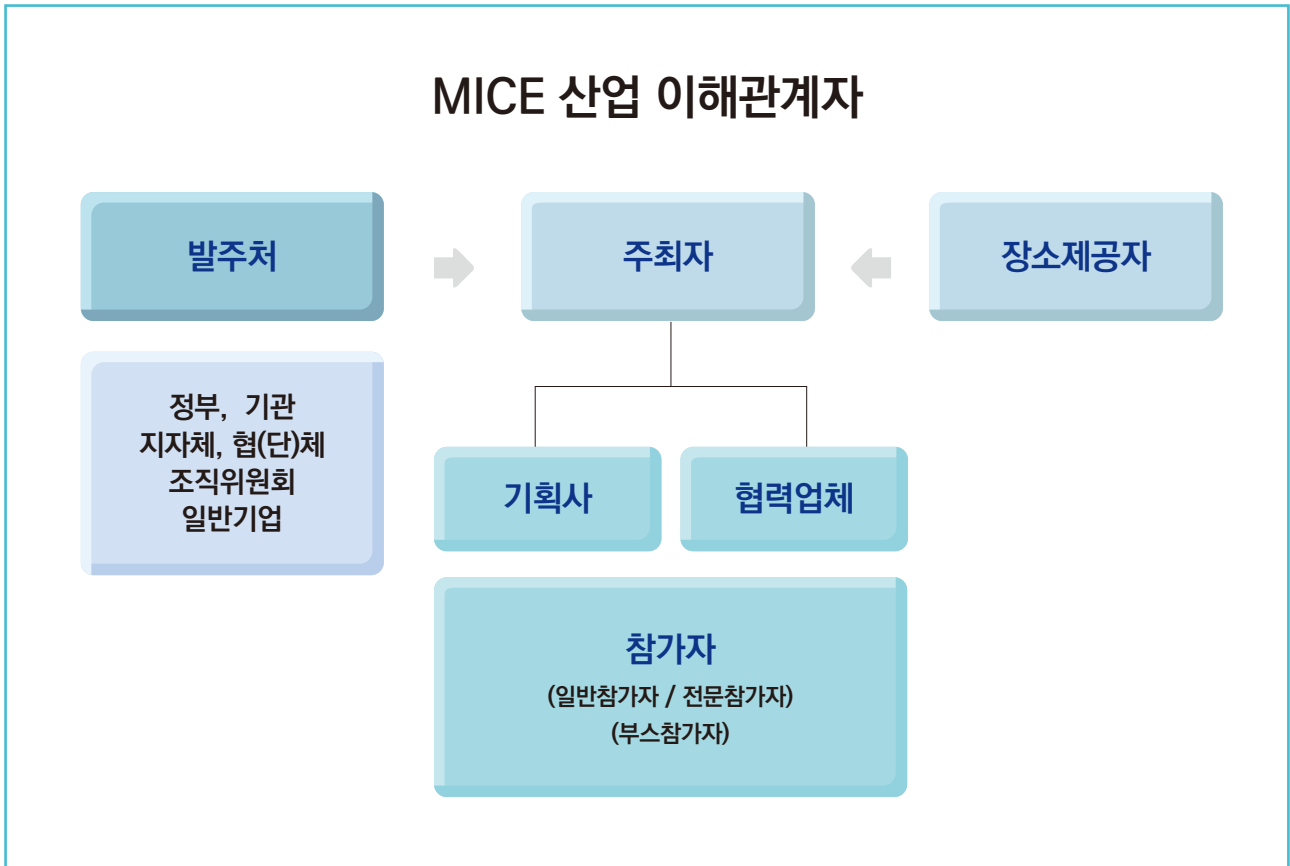
- 참가자

MICE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MICE 행사 참가자로서 회의 및 컨벤션 참가자, 전시회 참가자(일반인, 전문가, 바이어 등), 포상여행의 참가자를 말한다.

- 부스 참가자

MICE 행사의 특정 공간을 점유하는 독립부스 또는 조립식부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참가자를 말한다.

I. 서론



5) 매뉴얼 주요 내용

- 본 매뉴얼은 '체크리스트(공통/내용별)'에 따라 해당하는 '매뉴얼 항목'으로 연계되어 그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 '매뉴얼'은 3개 부문으로 공통부문, 업무부문, 법률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 공통부문
- B. 업무부문
- C. 법률부문



A. 공통부문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조직구성
2.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배정
3. 안전위험 및 점검
4. 작업장 안전요소
5. 화재 점검 및 예방
6. 응급의료
7. 공중보건 및 위생시설 관리
8. 손실예방
9. 우발사태계획
10. 위험 전가
11. 보안계획
12. 보안인력 및 장비
13. 사고처리 절차
14. 재난재해
15. 비상사태 관리
16. 법적 책임과 규정 준수
17. 산업안전 및 보건
18. 차별금지 의무

B. 업무부문

19. 행사장소 선정
20. 옥외행사장 선정 및 설계
21. 전시부스 설치 및 시공
22. 구조물·무대·시스템 설계 및 시공
23. 프로그램의 안전성
24. 행사장 시설
25. 운영인력
26. 군중 관리
27. 참가자 동선 및 입·퇴장 관리
28. 행사장 주변 관리
29. 편의 서비스 및 폐기물 관리
30. 식음료 서비스
31. 관광 및 수송
32. 관광 체험활동
33. 숙박 관리

C. 법률부문

34. 산업안전보건법(1,2,3)
35. 중대재해처벌법(1,2,3)
3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7. 민법(공작물책임)
3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 공연법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1. 개인정보보호법
42.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43. 저작권법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A. 공통 체크리스트

1. 인명안전
2. 보건위생
3. 손실예방
4. 재난재해
5. 법 규정

B. 내용별 체크리스트

1. 참가자 관리
2. 행사장 조성 및 임시구조물 공사
3. 행사 운영
4. 관광·수송 및 숙박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A. 공통 체크리스트

1. 인명안전

1) 조직체계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A-1-1-1	MICE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				1
A-1-1-2	안전 분야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비상대응, 시설·구조물, 화재, 의료·구급, 보건·위생, 보안경비 등 필요 조직				1
A-1-1-3	안전관리를 위하여 '외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병원 등				1

체크 포인트

사업총괄책임자(PM)가 MICE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데 부담이 있으므로 가능한 안전관리책임자는 모든 행사 부문의 안전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권장함

-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 및 통제 아래 운영되며, 해당 MICE 행사에 참여하는 인력이 업무와 중복 담당이 가능함

안전관리 담당자 네트워크 구성

- MICE 행사 발주처, 기획사, 장소제공자, 분야별 협력사(장치, 시공, 수송, 인력 등)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서로 업무 연락망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담당자는 협력사의 현장대리인이 겸임하거나 특정인을 선임



2) 안전관리비

A-1-2-1	MICE 행사에 필요한 '안전 관리비'를 산정하고 전체 예산에 반영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
A-1-2-2	MICE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적 보험'에 가입하였는가? * 보상범위: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
A-1-2-3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법」에 따라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의 조건을 충족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 39

체크 포인트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안전관리비: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참가하는 축제, 고위험 축제 등은 행사 개최비용의 1% 이상 확보
- 보험가입: 사망(1.5억 원), 부상(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 1.5천만 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 1,000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에 적용하며,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안전관리비: 공연비용의 1.15% 이상(1천명~3천명 미만), 공연비용의 1.21% 이상(3천명 이상)
-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1명), 안전관리담당자(1천~3천명: 1명 이상, 3천명~: 2명 이상)
- 안전교육: 안전총괄책임자(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8시간 이상) 등
- * 전체 행사의 안전관리비에 해당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책정함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3) 안전관리 일반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A-1-3-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인/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였는가?				3 16 19 20 36
A-1-3-2	부문별 '협력업체'와 해당 업무 부문에 대한 안전관리를 협의하고,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
A-1-3-3	행사장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교통, 주차, 진출입 동선, 민원 예상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8
A-1-3-4	만일 행사장 주변의 교통 및 군중통제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지자체/경찰서 등)과 협의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8 40
A-1-3-5	MICE 행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장 주변의 방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 위험물, 취약시설, 불법 노점상, 집회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8
A-1-3-6	행사 기간 중, 새로운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가? * <양식: 현장투어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

체크 포인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의 건축물 등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회의를 통해 MICE에 사용하는 물품, 서비스, 인력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모든 협력업체에게 잠재적인 신체적 위험과 부상, 질병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함

행사 장소 선정 및 조성시 주요 체크사항

- 행사장소의 수용 능력 / 행사장소 접근성 검토
- 행사장소의 대피 안정성 / 행사장 내부시설의 안정성 검토(통로, 전기, 계단, 가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행사장 건물의 안전 시스템 확인(소화기,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 행사장 주변의 교통, 지리적 환경 검토



(4) 화재 및 응급 대처

A-1-4-1	행사장에서 잠재적인 '화재 발생'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5 16 36
A-1-4-2	행사장 내 '화재감지시스템(경보감지기 등)'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장소제공자의 협조 필요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5 38
A-1-4-3	행사장 내 '화재진압시스템(소화전, 소화기 등)'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장소제공자의 협조 필요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5 38
A-1-4-4	행사장 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모든 자재는 '방염 재료(선방염 또는 후방염 처리)'를 사용하였는가? * 예외: 현수막/배너류, 종이 재질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5 37
A-1-4-5	해당 MICE 행사의 전담 인력은 '화재진압방법(소화기 등)'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5
A-1-4-6	비상시 '응급의료 처리'가 가능한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거나 훈련된 운영인력을 배치하였는가? * 자동제세동기(AED), 심폐소생술(CPR)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6

체크 포인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데,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을 말함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50㎡ 당 1대 소화기 배치
- 전시장, 숙박시설(호텔): 100㎡ 당 1대 소화기 배치

옥내 행사장 시설의 화재감지시스템 및 화재진압시스템 설치는 장소제공자의 필요사항이며, 주최자는 장소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행사장은 자동제세동기(AED)와 같은 응급장비를 보유하고, 심폐소생술(CPR)과 하임리크 구명법(Heimlich maneuver)과 같은 응급 절차에 대한 자격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MICE 조직을 위한 모범 사례는 모든 직원이 기본 응급처치 훈련을 받는 것으로 이 과정은 지역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음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2. 보건위생

(1) 식음료

A-2-1-1	식음료공급업체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사본 제출 ** 장소제공자의 협조 필요(장소제공자 내 업체인 경우)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7 30
A-2-1-2	식음료공급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적용대상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받았는가? * 장소제공자의 협조 필요(장소제공자 내 업체인 경우)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7 30
A-2-1-3	MICE 행사에 근무하는 운영인력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당일 제조, 유통 및 보관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7

체크 포인트

음식 서비스의 준비와 제공은 반드시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충분해야 하며, 음식 서비스 규정은 위생허가, 식품위생법,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기타 대중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포함

음식제공업체(위탁급식영업, 도시락제조·가공업)는 가능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를 활용해야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 요인의 발생 여건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

식음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소제공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장소제공자의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장소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상기 필요사항을 확인해야 함

보통 식중독은 식품매개 질병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일반적으로 설사, 메스꺼움, 구토, 경련성 복통 및 열 증상을 동반하며, 이는 부적절한 위생과 처리, 오염물질이 포함된 음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임



(2) 위생시설

A-2-2-1	행사장 내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는가? * 장소제공자의 협조 필요(장소제공자의 시설인 경우)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7
A-2-2-2	MICE 행사 참가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7
A-2-2-3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공중위생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었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7 29

체크 포인트

위생시설은 MICE 개최 기간 동안 예상 참가자 수와 유형에 따라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하고 필요 용품이 보충되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함

위생시설의 설치 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여자 대변기 수는 남자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
- 대변기(서양식 기준)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0.85m 이상, 긴 변이 1.3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소변기는 1인 점용 폭을 0.75m 이상

폐기물 발생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위생 및 환경보호 규정, 적정한 폐기물 계약, 폐기물의 합법적 처리를 준수해야 함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3. 손실예방

(1) 우발사태계획

A-3-1-1	우발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대비한 '우발사태계획(Plan B)'을 마련하였는가? * 우천대비 실내장소, 예비 발전기, 우비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89
A-3-1-2	부문별 '협력업체'와 해당 업무 부문에 대하여 '우발사태계획'을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89

(2) 위험 전가

A-3-2-1	해당 MICE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검토하고,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행사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036
A-3-2-2	부문별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및 책임 범위'를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0
A-3-2-3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계약 내용에 따른 보험 가입'을 확인하였는가? *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사본 제출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0

체크 포인트

MICE와 관련된 활동, 사람, 수입원, 정보,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우발사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함

- 예시) · 만일 기상 악화로 인해 MICE의 연기나 취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만일 전력, 통신 또는 다른 시설 서비스의 중단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만일 지역 교통 서비스가 파업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만일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만일 사용하기로 했던 시설이 화재나 태풍으로 파괴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관리자는 감당할 수 없는 손실에 대비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과실·부상·사망으로 인한 보상 비용 및 법적 합의 비용
- 재산 손해나 중요 인력의 손실로 인한 대체 비용
- 소송 또는 MICE 취소 비용까지 포함 고려



(3) 보안

A-3-3-1	MICE 행사의 '참가자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안(경비)인력'을 산출하고 배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1 12
A-3-3-2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비 및 도구'를 마련하고 배치하였는가? * 금속탐지기(MD), 차단봉, 무전기, 경광봉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1 12
A-3-3-3	행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보안(경비)인력에게 '사고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양식: 사고보고서> 참조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1 13
A-3-3-4	행사장의 보안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구축되었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1 12

체크 포인트

보안(security)은 위험, 손실 및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안은 피해 발생의 원인이 '인간의 행위'라는 점에서 안전(safety)이라는 개념과 구분됨

보안계획은 손해, 피해, 부상, 손실, 악화로부터 사람, 재산, 이미지, 명성, MICE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됨

보안장비 유형

- CCTV, 카메라(사진, 동영상), 양방향 무전기, 확성기(megaphone), 경적(horn)
- 단봉/경광봉, 분사기, 손전등, 시건장치
- 동작 탐지기, 금속 탐지기(MD, metal detector), 엑스레이(X-ray) 검색 운반 장치, 검사용 장갑
- 바리케이드(barricade), 차단봉 (벨트형, 체인형)
- 차량(골프카트, 사륜차), 보호 조명 등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4. 재난재해

(1) 자연/사회재난

A-4-1-1	MICE 행사 기간 중 '감염병'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 코로나, SARS, MERS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4
A-4-1-2	MICE 행사 기간 중 '기상학적 재난'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 우천/홍수, 태풍, 폭염, 한파, 폭설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4
A-4-1-3	MICE 행사 기간 중 '사회적 재난'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 우발성(화재/폭발/붕괴 등) * 의도성(방화/파업/시위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4
A-4-1-4	MICE 행사 기간 중 '기술적 재난'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 전력/공공시설의 중단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4

체크 포인트

재난재해의 유형은 다양한데, 급작스럽게 또는 천천히 나타날 수 있으며,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상당한 시간 또는 짧은 시간에 걸쳐 발생할 수도 있음

- 행사장, 행사장의 인접 지역 또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지 행사장 접근이나 참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재앙의 자연재해로부터 기상예보의 기술적 오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검토되어야 함
-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극심한 변동은 서비스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며, 심지어 MICE 행사가 취소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테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정된 MICE 행사는 수많은 사람이 참가하며 감정적인 영향, 매스컴의 보도로 인하여 우선적인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점차 세계적으로 테러리스트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MICE 행사, 축제, 스포츠, 호텔, 클럽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



(2) 비상대응

A-4-2-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행사장의 내·외부, 주변 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5 16 20 36
A-4-2-2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내부 보고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였는가? * 업무흐름도, 연락망, 장내방송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5
A-4-2-3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외부 관련 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 소방서, 경찰서, 119구급차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5
A-4-2-4	행사장 및 시설 내에 '비상 대피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거나 참가자에게 안내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5 39
A-4-2-5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참가자의 '대피 공간 또는 장소'를 확보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5
A-4-2-6	해당 MICE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게 비상대응 방안에 대하여 지침을 안내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5

체크 포인트

비상사태 관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서, MICE 조직과 참가자의 적절한 대응능력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비상대책(EAP, Emergency Action Plan)은 MICE 주최자와 기획사가 비상 대응 당국에 신속·효과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법, 대피자를 위한 집결 구역의 지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상 방송시스템의 사용, 현장의 료실 배치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행사장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피로 표기 / 안내, 대피공간 또는 장소의 확보'는 장소제공자의 협조가 필요함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5. 법 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A-5-1-1 중요	사업주(발주처 및 기획사를 칭함)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7 34(1)
A-5-1-2 중요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7 34(1)
A-5-1-3 중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7 34(1)
A-5-1-4 중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4(2)
A-5-1-5 중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에 관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4(2)
A-5-1-6 중요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4(2)

체크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도 전제하므로, MICE 주최자는 사업주가 될 수 있음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교육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장의 범위는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행사장 등) 까지 포함
- 도급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벌칙 또는 과태료 : A-5-1-1(과태료), A-5-1-2(과태료), A-5-1-3(과태료), A-5-1-4(과태료), A-5-1-5(과태료), A-5-1-6(벌칙)



(1) 산업안전보건법

A-5-1-7 중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4(2)
A-5-1-8 중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4(2)
A-5-1-9 중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4(2)
A-5-1-10 중요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4(3)
A-5-1-11 중요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였는가? (단,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4(3)

체크 포인트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함

*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관계 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벌칙 또는 과태료 : A-5-1-7(벌칙), A-5-1-8(벌칙), A-5-1-9(벌칙), A-5-1-10(과태료), A-5-1-11(벌칙)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2) 중대재해처벌법

A-5-2-1 중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1)
A-5-2-2 중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1)
A-5-2-3 중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2)
A-5-2-4 중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법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는 등 조치를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2)
A-5-2-5 중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2)

체크 포인트

적용범위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3자에게 업무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도 전제하므로, MICE 주최자는 사업주가 될 수 있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법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는 등 조치를 하였는가’가 있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이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MICE 산업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만 배치

별칙 : A-5-2-1(처벌), A-5-2-2(처벌), A-5-2-3(처벌), A-5-2-4(처벌), A-5-2-5(처벌)



(2) 중대재해처벌법

A-5-2-6 중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2)
A-5-2-7 중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3)
A-5-2-8 중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3)
A-5-2-9 중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였는가?(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3)

체크 포인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세부적으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음

별칙 : AA-5-2-6(처벌), A-5-2-7(처벌), A-5-2-8(처벌), A-5-2-9(처벌), A-5-2-10(처벌)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B. 내용별 체크리스트

1. 참가자 관리

(1) 등록/초상권

B-1-1-1	현장 등록 시, 동시에 몰리는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록 데스크 (부스)와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1인당 1㎡ 이상 확보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7
B-1-1-2	현장 등록 및 행사장에서 참가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고지 또는 안내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7
B-1-1-3	유명인/참가자의 초상, 성명,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는가? 또는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적절히 변경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2
B-1-1-4	참가자의 얼굴(초상사용권)이 행사기록을 위한 사진·영상 촬영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참가자에게 사전에 고지 또는 안내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2

체크 포인트

MICE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 흐름을 통제하고 참가자와 참관객이 행사장에 입·퇴장하거나 행사장 내에서 활동을 안내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차단봉, 펜스, 방어벽(barricade)을 활용할 수 있음

- 참가자 등록데스크 및 입·퇴장 동선관리, 비상대기 공간을 마련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함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함

일반인이건, 유명인이건 그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서명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2) 개인정보보호

B-1-2-1	참가자의 수집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6 41
B-1-2-2	참가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1
B-1-2-3	행사 진행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와 기획사는 해당 내용을 상호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1
B-1-2-4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화장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및 운영하지 않았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1
B-1-2-5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1

체크 포인트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등 제15조 제2항 1호~4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강화된 보호를 하고 있어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등을 알려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2. 행사장 조성 및 임시 구조물 공사

(1) 행사장 조성

B-2-1-1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장소제공자와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4
B-2-1-2	행사장 조성 시,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였는가? * 안전모, 안전화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 21
B-2-1-3	행사장 조성 시, 작업장의 위험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경고 사인'을 표기 하거나 부착하였는가? * 위험사인, 주의사인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
B-2-1-4	행사장 조성 시, 작업장에서 '시공/설치 작업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중량물 운반, 화기 작업, 고소(高所) 작업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 21
B-2-1-5	행사장 내·외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조치하였는가? * 출입문, 대기공간, 경사로, 비상구, 계단, 배전반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9 20 24
B-2-1-6	행사장은 모든 참가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고려하여 조성되었는가? * 장애인, 인종, 종교, 나이, 성별 등 차별금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6 18
B-2-1-7	행사장 조성 시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barrier-free)를 반영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8 29

체크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상, 피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라는 법령이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구성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의 의무가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음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입장객 누구나 편리한 행사장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행사장 이동 및 관람에 대한 물리적 장벽은 물론 커뮤니케이션(키오스크, 모바일앱, 안내 책자의 점자, QR코드를 통한 음성안내 등)의 장벽까지 제거하는 것을 말함



(2) 부스·무대·구조물 공사

B-2-2-1	행사장의 시설 및 전시공사를 총괄하는 안전담당관리자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배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1 22
B-2-2-2	행사장의 협력(시공)업체는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충족하는 적격업체로 선정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5(3)
B-2-2-3	협력(시공)업체/독립부스 참가업체와 안전관리 및 책임 범위를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1 22
B-2-2-4	전시부스 참가자와 손실 발생의 책임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 물품도난, 시설파손, 부스 내 화재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10 21
B-2-2-5	부스·무대 및 구조물은 하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였는가? 만일 안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1 22 37
B-2-2-6	무대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하여 콘솔과 무대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 상태의 안전성을 점검하였는가? * 전선보호제, 전선보호 방지턱(옐로자켓)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1 22

체크 포인트

부스/무대/구조물 공사 안전관리 사항

- 시설안전 점검기록 확인을 통한 특이사항 파악 및 대응책 마련
- 추락, 미끄러짐, 충돌 등 시설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위험요인 파악, 대응책 마련
- 행사장/무대 시설 설치 및 철거 업체 계약시 안전 조치 준수에 관한 의무사항 반영
- 폭발, 화재, 감전을 유발하는 위험시설 및 장비 운용 계획 검토(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 및 무대장비, 음식체험을 위한 화기/전열기 등)
- 전선 마감 정리, 고압전선 덮개 안전장치 설치, 우선 시 대응방안 검토 등 감전사고 예방 조치 등

장소제공자가 규정한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반드시 착용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3. 행사 운영

(1) 운영 관련

B-3-1-1	모든 참가자의 행사장 및 시설의 출입 동선은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7
B-3-1-2	무대를 사용하는 VIP, 연사, 출연진 등의 무대 등단 및 퇴장 동선은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7
B-3-1-3	행사장/시설의 공간 규모와 참가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배치하였는가? * 진행요원, 안내요원, 보안(경비)요원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5 27
B-3-1-4	해당 MICE 행사에 참여하는 운영인력에게 행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5
B-3-1-5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참가자/관람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동선을 확보하고 점검하였는가? * 장소제공자 협조 필요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6
					27 39

체크 포인트

MICE 행사 및 프로그램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운영요원은 안전관리 교육이 필수적임

안전관리 교육 내용

- 출입구 위치, 소화기/알람 위치, 참여자 이상 행동시 보고, 이상 행동 참여자 통제(금지구역 진입 등)
- 구간별 최대 수용 인원, 비상통로 통제 및 관리, 행사장/프로그램 위험요소
- 주요연락처, 비상시 행동요령
- 현장도면 숙지, 위생 및 편의시설 숙지, 프로그램 숙지, 참가자 상태 모니터링
- 통로 및 출구 통제, 언론 인터뷰 금지 등



(1) 운영 관련

B-3-1-6	1,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MICE 행사의 경우, 참가자/관람객의 통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6 27 40
B-3-1-7	만일 위험한 도구나 특수효과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화염, 물, 칼, 불꽃, 격파, 특수효과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3
B-3-1-8	전시 부스별 전시물, 시연(작동), 체험 등에 대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차량류의 시동, 전시물 작동, 화염 사용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3

체크 포인트

MICE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에서 통행 흐름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위험할 수 있고 군중이 많고 밀도가 높을수록 이동은 더욱 위험성이 높아짐

안전관리자는 대기행렬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대기라인에서 군중 밀도와 압력, 규모, 지속 기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불평부터 위험한 군중 이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도 장소의 특성, 공간의 규모에 따라 통행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함

프로그램의 제작 요소는 조명, 음향, 영상, 특수효과 등으로 프로그램 연출에 사용되며, 참가자 안전의 관점으로 제작 요소의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조치하여야 함

전시참가자의 부스에 설치된 전시물을 작동하거나 시연을 하는 경우, 관람객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함. 특히 화염이나 열이 발생하는 전시품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 전시물은 화상이나 부상을 발생시킬 수 있음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2) 홍보/제작물의 저작권

B-3-2-1	MICE 행사에 사용하는 홍보/제작물은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서 작성되었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3
B-3-2-2	홍보/제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사용된다면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3
B-3-2-3	사용하는 저작물에 저작자(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3
B-3-2-4	사용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43

체크 포인트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 또는 직원이 창작한 것은 자신의 저작물에 해당하니 저작권 행사에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함

저작권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항상 창작자(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함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내용, 형식, 제호를 변경하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함



(3) 연회 및 식음료

B-3-3-1	연회장 내·외부 시설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비상구 계단, 배전반, 비상대피로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24
B-3-3-2	식음료공급업체와 안전관리 및 책임 범위를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0
B-3-3-3	연회장의 서빙 인력은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배치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장소제공자 확인 가능(장소제공자 시설인 경우)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0

체크 포인트

식음료 서비스는 안전한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질병 및 부상 예방을 포함해서 안전관리자의 우선 관심사로 식음료 서비스와 연관된 일반적인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함

음식물 서비스의 준비와 제공은 반드시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음식물 서비스 규정은 위생허가, 식품위생법,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기타 대중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케이터링업체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안전을 고려하며 식음료를 준비하고, 서비스 인력은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직원의 감염병을 식별하고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4. 관광·수송 및 숙박

(1) 관광 프로그램

B-4-1-1	관광업체와 안전관리 및 책임 범위를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B-4-1-2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광코스 현지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였는가? * 날씨, 온도, 교통, 혼잡도, 범죄, 시위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32
B-4-1-3	만일 관광 프로그램이 잠재적인 고위험이 있다면,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특약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는가? * 고위험 레포트 및 체험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2
B-4-1-4	관광업체 가이드는 관광 프로그램의 안전관리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B-4-1-5	응급한 상황에서 참가자가 필요한 상비 약품류를 탑승 차량에 비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B-4-1-6	관광 프로그램 운영 중,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경찰, 소방, 의료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체크 포인트

외부환경 관련 위험요소

- 안보치안 : 파업, 시위, 범죄, 테러 등
- 재해재난 : 대규모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의 자연재난 및 감염병, 다중 밀집 인파사고 등

관광산업 관련 위험 요소

- 교통, 숙박, 음식, 안내, 쇼핑 등 미흡한 안전관리로 인해 다수의 관광객에게 인적/물적 피해 발생
- 관광지별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사고

관광지 주변환경 점검 사항

- 방문지 및 방문시설별 거리, 소요시간, 시설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확인
- 방문지별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및 인근 의료시설 확인
- 경유지 내 위험지역,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확인
- 기상예보를 고려한 행사 일정 및 행사 진행계획 수립
- 기상예보에 따른 참가자 구비 물품 사전 안내 (우산/우비, 방한물품 등)
- 폭설, 폭염, 폭우 등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대안 및 대응방안 마련



(2) 수송

B-4-2-1	수송업체와 안전관리 및 책임 범위를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B-4-2-2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송차량의 연식과 운전자 경력을 검토하였는가? * 버스(7년 이하), 승합차(5년 이하)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B-4-2-3	수송차량 이용 시, 탑승자에게 안전 및 주의사항을 고지 또는 안내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B-4-2-4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인력에게 수송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B-4-2-5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경찰, 소방, 의료)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1

체크 포인트

수송 관련 점검 사항

- 운전자 특성(운전경력, 사고경력 등)
- 차량 상태 확인(정기점검표 확인, 노후화, 브레이크 상태 등)
- 차량 내부에 비상약품 비치 등

참가자 수송시 안전관리

- 도보 및 차량 이동
 - 외국인 참가자 대상 차선, 신호체계 등 교통안전 관련 기초 교육
 - 인솔자가 선두에 위치하여 위험요인 사전 파악
 - 소화기, 비상탈출 망치 등 안전장비 구비 여부 및 위치 확인
 - 운전자 건강 상태 및 당일 컨디션 확인
- 선박 이동시
 - 선박 내 구명조끼, 비상벨, 비상구 위치 확인
 - 참가자 대상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탈출 방법 교육

II. MICE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3) 숙박

B-4-3-1	비상시 숙박시설의 대피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숙박 참가자에게 고지 또는 안내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3
B-4-3-2	숙박 참가자 간의 안전을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객실 배정이 가능하도록 숙박시설에 요청하였는가? * 국가(적대국, 미수교국), 인종, 종교, 성별 등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3
B-4-3-3	참가자 숙박시설의 담당 인력에게 숙박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3
B-4-3-4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숙박시설 담당자 및 관련 기관(경찰, 소방, 의료)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매뉴얼 No.
					33

체크 포인트

참가자의 호텔 객실은 국가별, 개인별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다양한 호텔(호텔 등급별)의 객실 예약과 외교적, 종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호텔을 분리 배정해야 함

- 잠재적으로 사고 발생이 가능한 미수교국, 비우호적인 국가관계의 참가자
- 종교 문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참가자
- 국가별로 호텔을 배정하거나 층수를 다르게 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함

객실 안전관리 점검 사항

-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방재설비 구비 여부 확인
- 객실별 잠금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숙소 내 방송시설 구비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객실 내 적절한 환기 및 정화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A. 공통부문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조직구성
2.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배정
3. 안전위험 및 점검
4. 작업장 안전요소
5. 화재 점검 및 예방
6. 응급의료
7. 공중보건 및 위생시설 관리
8. 손실예방
9. 우발사태계획
10. 위험 전가
11. 보안계획
12. 보안인력 및 장비
13. 사고처리 절차
14. 재난재해
15. 비상사태 관리
16. 법적 책임과 규정 준수
17. 산업안전 및 보건
18. 차별금지 의무

C. 법률부문

34. 산업안전보건법(1,2,3)
35. 중대재해처벌법(1,2,3)
3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7. 민법(공작물책임)
3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B. 업무부문

19. 행사장소 선정
20. 옥외행사장 선정 및 설계
21. 전시부스 설치 및 시공
22. 구조물·무대·시스템 설계 및 시공
23. 프로그램의 안전성
24. 행사장 시설
25. 운영인력
26. 군중 관리
27. 참가자 동선 및 입·퇴장 관리
28. 행사장 주변 관리
29. 편의 서비스 및 폐기물 관리
30. 식음료 서비스
31. 관광 및 수송
32. 관광 체험활동
33. 숙박 관리

39. 공연법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1. 개인정보보호법
42.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43. 저작권법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A. 공통부문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조직구성
2.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배정
3. 안전위험 및 점검
4. 작업장 안전요소
5. 화재 점검 및 예방
6. 응급의료
7. 공중보건 및 위생시설 관리
8. 손실예방
9. 우발사태계획
10. 위험 전가
11. 보안계획
12. 보안인력 및 장비
13. 사고처리 절차
14. 재난재해
15. 비상사태 관리
16. 법적 책임과 규정 준수
17. 산업안전 및 보건
18. 차별금지 의무

B. 업무부문

19. 행사장소 선정
20. 옥외행사장 선정 및 설계
21. 전시부스 설치 및 시공
22. 구조물·무대·시스템 설계 및 시공
23. 프로그램의 안전성
24. 행사장 시설
25. 운영인력
26. 군중 관리
27. 참가자 동선 및 입·퇴장 관리
28. 행사장 주변 관리
29. 편의 서비스 및 폐기물 관리
30. 식음료 서비스
31. 관광 및 수송
32. 관광 체험활동
33. 숙박 관리

C. 법률부문

34. 산업안전보건법(1,2,3)
35. 중대재해처벌법(1,2,3)
3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7. 민법(공작물책임)
3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 공연법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1. 개인정보보호법
42.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43. 저작권법



A. 공통부문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조직구성

(1) 체크리스트 항목

A-1-1-1. MICE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되었는가?

A-1-1-2. 안전 분야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A-1-1-3. 안전관리를 위하여 외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 중요성

- MICE 행사의 기획 및 운영 단계에서 각자의 담당 업무로 인해 안전관리의 미흡 가능성
- 전체적 차원에서 안전 문제를 전담하여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가진 전담 인력이 중요
-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 조직에서 행사 경험이 풍부한 기획자 또는 운영자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

•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구성

- 안전관리의 분야별 담당자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안전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는 해당 MICE 행사에 참여하는 인력으로서 업무와 중복 담당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 및 통제하에 운영

• 안전관리담당자 네트워크 구성

- 주최자, 장소제공자, 분야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 및 지원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전시컨벤션센터의 현장관리를 위한 현장대리인을 겸임하거나 특정인을 선임 및 운영

• 안전관리 외부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성

- 행사의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 행사장 인근의 안전관리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 및 운영
- 행사 성격에 따라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행사 안전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

• 현장대리인 (자료: 킨텍스 행사 안전관리지침, 2023)

- 보통 전시컨벤션센터는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 등록을 요구
- 현장관리는 주최자로부터 도급받은 협력업체가 담당하며 주로 전시컨벤션센터의 지정등록업체로 한정하며, 미지정 분야의 현장관리는 별도의 자격을 요구
- 현장대리인은 도급인(청부인)을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처리 권한 및 책임을 갖는 자로, 현장관리업체는 자격을 충족하는 1명 이상의 현장대리인을 등록
 -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지정등록업체 소속 직원으로 4대 보험 수혜자
- 기본부스 외 독립부스 등을 설치하는 전시디자인 설치업체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구조물에 대한 공사 일체(전기, 리깅, 방염 등)의 총괄 처리 권한 및 책임을 보유

2.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배정

(1) 체크리스트 항목

- A-1-2-1. MICE 행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고 전체 예산에 반영하였는가?
- A-1-2-2. MICE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적보험에 가입하였는가?
- A-1-2-3.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법에 따라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의 조건을 충족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개별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공연·행사 등의 경우, 그 법령에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기준이 있을 때는 그 기준 등에 따를 수 있고, 없을 시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을 적용
- 행사와 관련된 안전관리비는 행사개최 전체 비용 대비 1%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권고하며 해당 행사는 다음과 같음
 -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 명 이상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행사
 -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 모든 행사는 인적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행사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 * (사망) 1억5천만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 원
- 공연과 관련한 안전관리비는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최소비율은 다음과 같음
 -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공연비용의 1.21% 이상
 - * 행사나 축제에 공연이 포함되는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연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되므로 그 예산 범위는 행사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확실히 정할 것을 권장
-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 규모별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음
 -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공연과 관련한 안전관리조직은 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교육주기: 2년)
-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교육주기: 2년)

* 교육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http://safety.kbrainc.com>)에서 온라인 수강 가능

[참고] MICE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1천 명 이상 참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개최기관은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사전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확인

- 순간 최대 참가인원 1천 명 이상이 예상되는 행사
- 지자체별 관련 조례 확인: 제주도는 참가인원 500명 이상에 적용

2)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양식에 맞게 작성
-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개최지의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청취 및 협업방식 조율

3) 심사 및 변경사항 반영

- 심사: 관할 시·군·구는 서면 검토 및 필요시 현장 점검 수행
- 변경: 관할 시·군·구로부터 계획 보완을 요청받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개최 3일 전까지 수정된 내용을 제출

3. 안전위험 및 점검

(1) 체크리스트 항목

- A-1-3-1. MICE 행사가 개최되는장소/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인/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A-1-3-2. 부문별 '협력업체'와 해당업무 부문에 대한 안전관리를 협의하고,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는가?
- A-1-3-6. 행사기간 중 새로운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매일 '현정점검'을 실시하는가?

(2) 내용 설명

• **모든 MICE 활동 및 프로그램과 행사장의 모든 것은 잠재적으로 안전 위험에 영향을 미침**

- 옥외행사장의 구조물 위에서 발을 구르는 관중은 구조물을 약하게 만들거나 장비를 넘어뜨릴 수 있는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진동을 발생시킴

- 무대 장면을 잘 보려고 담벼락, 설치물, 환풍구 등 주변의 어디든지 올라가서 붕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물처럼 얇힌 전원 코드와 케이블과 같은 전기선들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은 물론 잠재적인 화재 및 감전의 발화점이 될 수 있음
- 압축 가스통은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노즐이 터지는 경우 무기가 돌변할 수 있음
- 어두운 조명은 통로가 잘 보이지 않거나 신원불명의 누군가에 의해 범죄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
- 모든 임시 구조물과 장치장식물은 반드시 적절하게 설치하고 안전하게 고정해야 함
- 모든 장비는 반드시 올바르게 설치되고 운용하며 손상이나 오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 추락과 돌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출입금지 구역의 주변에 장벽을 설치하며, 적절한 안전 경고 사인을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해야 함
- 강풍은 텐트를 날려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물건을 수십 미터 밖으로 날려 보낼 수 있음
- 폭우는 강을 범람하게 하거나 나대지에 엄청난 흙탕물 웅덩이를 만들 수 있으며, 번개는 기둥, 송신탑 전신주에 내리칠 수 있음
- 옥외행사장은 해충, 벌레를 퇴치하기 위하여 해충약을 미리 살포하여야 하며, 유행성출혈열과 같은 급성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풀밭 출입금지를 위한 경고사인도 설치해야 함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회의를 통해 MICE에 사용하는 물품, 서비스, 인력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모든 협력업체에게 잠재적인 신체적 위험과 부상, 질병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함
- MICE 행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안전관리 회의를 통하여 점검함
-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범위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모든 MICE 스태프부터 운영요원까지 함께하는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을 강화시켜야 함
- 불안정한 관행이나 조건은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천명해야 하며,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해야 함

• MICE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환경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함

- 사전 장소점검을 하는 동안 MICE 요소나 장소의 어떤 측면이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야 함
- 점검해야 할 모든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 현장투어점검(walk-through inspection)은 MICE 행사에 앞서 예상하지 못했거나 발생 가능한 안전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함
- 현장투어점검은 시행하고 있는 안전조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을 식별하기 위해 행사 기간 중에 매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MICE 행사나 박람회 매우 중요하며 '일일 안전 브리핑'도 필요함



4. 작업장 안전요소

(1) 체크리스트 항목

- B-2-1-2. 행사장 조성 시,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였는가?
- B-2-1-3. 행사장 조성 시, 작업장의 위험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경고 사인을 표기하거나 부착하였는가?
- B-2-1-4. 행사장 조성 시, 작업장에서 시공/설치 작업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작업장의 안전 요소는 충분한 시간과 훈련,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임**
- **MICE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현장 사고는 작업을 마치기 위해 급히 서두를 때 발생함. 이때가 바로 작업자가 가능한 과업을 빨리 완수하려고 적절한 안전 예방조치를 앞서 가버리는 시점임**
 - 무언가에 닿으려면 사다리나 적절한 장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근처의 아무 곳에 오르거나 의자에 올라서거나 가까이 있는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됨
 - 반드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할당되어야 하며, 특히 밤늦게 작업이 끝나거나 이미 피로도가 높은 작업자와 함께 하는 이동 작업일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해야 함
- **작업자에게 과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 장비,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주 근접한 상태에 있는 작업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기계, 차량, 장비를 조작하는 모든 작업자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함**

〈일반적인 작업장 위험 요소〉

물리적 요소	소음, 추위/더위, 조명, 장비, 미끄러짐/발 헛디딤, 장비보호물 부족, 낙상위험, 전기충격, 환기, 바닥표면 수준 및 상태, 상해 노출
화학적 요소	공기오염(먼지, 증기, 유독연기, 가스, 안개, 흡연), 오염물질 접촉(용제, 파우더), 피부접촉/흡입/섭취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는 액체 및 기체 물질
인체공학적 요소	반복적인 동작, 매뉴얼 취급절차, 불편한 위치, 전신/국부 떨림, 몸 비틀기, 오래 지속되는 정적인 자세, 물리력 행사, 작업과정/장소/방법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전염성 요소	바이러스, 혈액 매개 질병, 체액, 곰팡이, 박테리아, 전염성 병원균 노출
스트레스	훈련 부족, 업무 속도, 괴롭힘, 두려움, 걱정, 피로, 기타 신체적/감정적 긴장을 야기하는 다양한 압력

- **어떤 물질을 취급하거나 작업을 할 때는 개인보호장비와 적합한 의복이 필요함**
 - 안전 체인, 안전 손잡이나 끈, 안전화, 안전모, 두꺼운 장갑, 긴소매 셔츠, 고글, 얼굴 가리개, 방독마스크, 등 보호대(back brace), 청각 보호장비, 발가락 보호대 등
- **장식이나 제작 장비를 설치, 이동, 제거할 때는 사다리, 공중 작업차, 지게차, 소형 운반차, 작업대, 비계(飛階)와 같은 적절한 장비가 제공되어야 함**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많은 부상은 어디서부터 추락하거나 사람에게 무엇이 떨어지거나 구조물이나 장비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추락 위험에 기인함
- 통상 작업대나 작업자가 지상에서 1.8m 이상 높이에 있는 경우 추락 보호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함
- 위험경고, 금지, 화재 안전, 명령/방향/정보 사인은 작업 현장에는 반드시 필요함
 - 모든 위험 지역이나 위험한 장비 및 보조기구에 안전 및 경고 사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예. '경고: 낙하주의' 사인)
 - 무대 뒤의 전기시설과 같이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경고 사인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인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원래의 용기나 포장에 붙어있는 경고 꼬리표(tag)나 라벨은 모든 위험물질에 부착시켜야 하며, 내용물을 이동하거나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복사하여 필히 붙여서 사고, 질병, 누출, 비상 상황에 대응할 때 자신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함

5. 화재 점검 및 예방

(1) 체크리스트 항목

- A-1-4-1. 행사장에서 잠재적인 화재 발생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A-1-4-2. 행사장 내 화재감지시스템(경보감지기 등)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A-1-4-3. 행사장 내 화재진압시스템(소화전, 소화기 등)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A-1-4-4. 행사장 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모든 자재는 방염 재료(선방염 또는 후방염 처리)를 사용하였는가?
- A-1-4-5. 해당 MICE행사의 전담 인력은 화재진압방법(소화기 등)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화재 안전은 모든 MICE, 행사 장소, 업무현장, 운영에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인명안전, 재산보호는 물론 화재예방까지 포함
- 모든 MICE의 배치는 MICE의 유형 및 범위에 따라 적절한 화재예방 및 비상사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책임자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화재안전에 대한 평가는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능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우선 고려사항은 화재 및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방법과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임. 화재는 2분 이내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책을 수립함
- 화재예방 전략은 가연성 재료를 피하고 모든 공간을 쓰레기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며 전열 기구의 오용을 없애야 함. 장치장식용 재료는 가능한 내연성, 난연성 또는 불연성 제품을 사용하며, 가연성 재료의 경우 재료 표면에 불연제를 뿌리거나 처리하여 재료가 타지 않게 조치해야 함



〈 불연처리가 필요한 장치장식용 재료 〉

식물 제품	아크릴(acrylic), 올이 굵은 삼베, 면, 펠트, 울, 황마, 리넨, 금속함유, 모슬린,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모시, 인조견, 면포, 비단, 벨벳 등
나무 제품	대나무, 나뭇가지, 판지, 셀룰로오스 판지, 상록수, 목재, 합판 등
종이류	주름 종이, 색종이 조각, 종이 뜯어 붙이기, 색 테이프, 화장지 등
발포 제품	스티로폼(styrofoam), 폴리스티렌(polystyrene), 폼 코어(foam core), 폴리우레탄 폼 (polyurethane form) 등
기타 제품	조화, 건조, 가죽, 스페인 이끼, 페인트(수성, 유성) 등

- 산업전시회에서 요리나 장비 시연, 차량 전시는 자체 전기 시스템과 연결하지 말아야 하며, 연료탱크는 봉인되거나 잠금장치를 해야 하며, 전시참가자는 MICE 주최자와 같이 동일한 화재 규정을 준수해야 함
- MICE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사전 준비과정에서 작업자의 흡연은 절대 금지되며,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작업장 내에서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
- 화재감지시스템은 연기와 열에 대한 경보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 스프링클러(sprinkler) 시스템이 없는 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대 후면구역, 무대 밑, 관람석(grandstand) 등을 포함해야 함. MICE의 규모, 위치, 배치에 근거한 화재감지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소방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스프링클러, 소화전, 소화기와 같은 화재진압시스템은 모든 시설에서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두어야 하고,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 보통 통로와 비상구를 따라서 배치함
- 소화기는 원통형 용기로 떨어지면서 밸브가 깨지면 무기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닥에 세워 놓지 말고 소화기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받침대 등)와 함께 배치함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소형소화기) 1단위 이상
 - 전시장, 숙박시설(호텔):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소형소화기) 1단위 이상
 -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난연재료로 된 경우 기준면적의 2배를 적용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_NFTC 101, 2023)
 - 용도에 맞는 형식의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말소화기는 대부분 ABC형식이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화재와 소화기의 종류〉

구분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용도	일반 화재	유류/가스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원인 물질	목재, 종이, 섬유	석유, 병커C유, 타르, 페인트, 가스, LNG, LPG, 도시가스	전기 스파크, 단락, 과부하	철분,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지르코늄
구분 색상	백색	황색	청색	회색

- 조명과 시계(visibility)는 대피상황에서 절대적이며 특히 비상구 사인(sign)과 피난통로의 조명은 매우 중요함. 모든 탈출 경로와 비상구는 비상 상황에서 독자적인 조명 전력을 보유하고 명확하게 잘 보여야 함
- 비상구 사인은 장식이나 다른 것으로 가리지 않게 하며, 화재나 특수효과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연기는 시야를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을 고려함

6. 응급의료

(1) 체크리스트 항목

A-1-4-6. 비상시 응급 의료 처리가 가능한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거나 훈련된 운영인력을 배치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MICE 현장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응급의료 상황으로 응급의료는 누군가가 즉시 처리하여야 할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을 앓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1~2% 정도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나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은 현장에서 대부분 치료할 수 있음
- 응급의료의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는 행사의 유형과 규모,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예상 행동, 행사장의 크기·위치·배치에 대하여 개최지의 응급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규모의 복잡한 MICE 행사는 응급의료시스템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안전담당자는 개최장소의 응급서비스 역량을 확인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함
- 행사장은 자동제세동기(AED)와 같은 응급장비를 보유하고, 심폐소생술(CPR)과 하임리크 구명법(Heimlich maneuver) 과 같은 응급 절차에 대한 자격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모든 MICE 행사는 규모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에 충분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지침은 다양함. 의료서비스의 고려요인은 예상 참가자수, 행사장의 환경, 활동,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측면, 접근 경로와 의료인력의 대응 시간 등임
 - 미국과 호주의 경우, 참가자 500명 이하의 행사나 인접 지역의 구급차나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행사장에는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함
 - 참가자 500명 이상의 행사는 최소한 2명의 숙련인력이 상주하는 응급처치서비스가 필요하며, 참가자 1만 명의 행사는 2곳의 응급처치 부스와 12명의 인력이 필요함
 - 국내의 경우, 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에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수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의료 서비스 인력과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음. 통상 행사나 축제 현장은 응급의료서비스 인력 및 부스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MICE 조직을 위한 모범 사례는 모든 직원이 기본 응급처치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아 과정은 지역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소방서나 보건소는 물론 지역의 의료시설과 보건 서비스단체는 행사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현장 응급시설은 행사장의 모든 위치로부터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눈에 띄어야 함. 구급차 서비스의 출입은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행사장 입구의 가까운 곳이나 구급차의 진입과 진출이 용이한 곳에 배치 필요
- 의료사고 대응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은 즉시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자신이 훈련을 받지 않은 대응 업무는 수행하지 말아야 함. 또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동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함

7. 공중보건 및 위생시설 관리

(1) 체크리스트 항목

- A-2-1-1. 식음료공급업체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A-2-1-2. 식음료공급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대상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받았는가?
- A-2-1-3. MICE 행사에 근무하는 운영인력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A-2-2-1. 행사장내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는가?
- A-2-2-2 MICE 행사 참가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였는가?
- A-2-2-3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공중위생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었는가?

(2) 내용 설명

- 안전관리담당자는 보건위험에 대한 우연적 또는 의도적 노출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기울이는 주의의무가 있음

- 공중보건 위험은 행사장, MICE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활동, MICE 참가자의 구성과 행위를 평가할 때 확인할 수 있음
- 대부분 공중보건 위험의 완화는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이 적절한 계획, 정책, 절차를 통해 제거되거나 제한되도록 하는 위생환경과 청결상태의 제공 여부에 달려있음
- 우천, 바람, 열, 습기, 추위는 위생과 보건 위험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 공중 보건의 범위 〉

· 식중독	· 레이저(laser) 사용	· 가축 동물
· 전염병	· 자외선 방사	· 벌레(개미, 벌, 모기, 파리)
· 알코올	· 공해(먼지, 소음)	· 설치류(쥐, 들쥐)
· 화학물질	· 인접 대지 사용	· 뱀
· 수로(물 깊이, 물살, 온도)	· 채석장 및 구덩이	· 늪
· 날씨(극한 온도, 바람)	· 유독성 잡초	· 습지

- **음식서비스의 준비와 제공은 반드시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충분해야 하며, 음식서비스 규정은 위생허가, 식품위생법, 생산물배상책임보험¹⁾, 기타 대중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포함함**
 - 모든 음식공급업체에게 필수적인 보건허가, 사업면허(신고), 보험담보 등에 대해 확인받아야 함
 - 충분한 식수부터 음식 세척시설, 직원 위생장비, 해충 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생 상태는 모든 케이터링의 운영, 구내 및 외부 케이터링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라 불리는 식품안전보증기준은 식품의 준비, 운송, 배치, 저장, 서비스하는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임**
 - 식중독과 관련된 오염물질 리스크와 위험을 식별, 모니터, 통제하기 위해서 음식공급자와 케이터링 운영을 이와 같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매개 질병은 보통 식중독이라고 부르며,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일반적으로 설사, 메스꺼움, 구토, 경련성 복통 및 열 증상을 동반함. 이는 부적절한 위생과 처리, 오염물질이 포함된 음식의 부정확한 준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임**
 - 오염물질이 포함된 식품(예. 해산물, 가금류 고기, 유제품)은 외부 케이터링 행사나 음식영업권자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리스크 평가에서 확인해야 함
 - 이러한 식품은 비록 음식 자체가 적절하게 요리될 때는 안전할 수 있지만, 오염을 막기 위해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는 표면에 위험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임

1) product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제조·판매한 상품을 구입·사용한 고객이나 취급업자가 그 상품에 의해 받은 신체적·물적 손해를 보증하는 보험.



- **행사인력의 식사 편의성과 시간 절약을 위해 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 행사인력의 건강 문제는 물론 행사 진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도시락은 유통기간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당일 제조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함
 - 도시락의 제조, 유통, 보관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함
 - 식중독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락의 제조/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청결과 위생 상태는 참가자, 참관객, 스태프 및 운영요원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임**
 - 식수는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모든 행사에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식수는 안전한 정화수 또는 생수로 제공해야 함
 - 위생시설은 MICE 개최 기간 동안 예상 참가자 수와 유형에 따라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하고 필요 용품이 보충되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함
- **위생시설의 설치 기준(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여자 대변기 수는 남자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
 - 대변기(서양식 기준)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0.85m 이상, 긴 변이 1.3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소변기는 1인 점용 폭을 0.75m 이상
- **필요 위생시설의 수량은 '동시체류인원 x 사용비율 x 시간당 사용률 ÷ 시간당 회전율'로 계산**
 - 통상 사용 비율은 남자좌변기 5%, 소변기 40%, 여자좌변기 50%, 미사용자 5%를 적용하며, 시간당 사용률은 3시간당 1회 사용을 가정하여 0.33으로 산정함
 - 사용시간은 남자좌변기 300초, 소변기 60초, 여자좌변기 120초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당 회전율은 '1시간÷ 사용시간'으로 산출함
 - 이와 같이 산출된 수량은 최소량이며, 장애인용은 화장실 설치장소에 각 1개소씩 설치
- **화장실 사용 시간은 여성이 평균적으로 5분, 남성은 3분이 소요되며, 여성의 화장실 대기시간은 남성보다 55~65%를 더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야외행사의 경우, 이동식 위생시설을 행사장에 배치하며, 세면시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이동식 화장실은 기울어지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위치하여 바닥에 잘 고정되어야 함
 - 화장실은 밝고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식음시설이나 보관구역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음
 - 이동식 화장실의 설치를 위한 행사장 진입, 청결 유지, 철수는 장소 및 운영계획에 포함시키고, 위생시설이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함
 - 화장실의 위치, 진입로, 조명, 안내판, 변기수는 참가자 수용 가능 인원수를 기준으로 준비
 - 화장실은 각 구역 주변에 곳곳에 배치하여 혼잡과 대기행렬이 길어지지 않고 분산되도록 계획
 -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배치
 - 화장실의 대기행렬이 비상 대피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고 관리
 - 화장실은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에 적절한 위생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

8. 손실예방

(1) 체크리스트 항목

- A-3-1-1. 우발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대비한 우발사태계획(Plan B)을 마련하였는가?
- A-3-1-2. 부문별 협력업체와 해당 업무 부문에 대하여 우발사태계획을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손실예방은 손실이나 파손으로부터 금융자산, 물리적 자산, 환경자산, 인적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별된 위험요소를 다루거나 취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활용함

〈손실예방 전략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분리 및 분배 전략 · 보안인력 및 장비 계획 · 여유 장비 및 시스템 계획 ·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대책 및 규칙 · 우발사태 및 지속적 계획 · 대응 훈련 및 연습 · 보험 담보
--	--

- 손실예방은 MICE의 목적, 과정, 사람, 물품, 장소, 실행에 적용되는 활동 영역에서 필요하며, 이는 예방, 감지, 통제, 우발사태계획, 복구 과정의 단계로 이루어짐

〈손실예방 프로세스〉



- 손실예방은 우선 식별된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하며, 그 대책이 위태롭게 되었는지 위험이나 취약성이 노출되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이를 모니터링을 해야 함. 일단 노출이 나타나면 그 영향은 가능한 응급사태계획을 통해서 통제하고 극복해야 함
- 손실을 쉽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순찰반이 MICE행사를 통해서 위험 요소와 불안한 활동을 찾아 안전관리담당자에 보고하며, 담당자는 요청받은 대로 대응 인력을 지원하는 절차가 필요함
- 통제수단은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행위적, 절차적 조치를 활용하며, 각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화된 통제수단이 지정되어야 함



〈손실예방 조치〉

물리적 조치	행위적 조치	절차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장벽 · 안전장비 · 보안장비 · 컴퓨터 보안 코드 · 제한/통제구역 · 화재경보/진압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 보상 장려책 · 조직 정책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시스템 · 정기적 유지보수 · 비상사태 계획 · 접근 및 승인 통제 · 자원 할당

9. 우발사태계획

(1) 체크리스트 항목

A-3-1-1. 우발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대비한 우발사태계획(Plan B)을 마련하였는가?

A-3-1-2. 부문별 협력업체와 해당 업무 부문에 대하여 우발사태계획을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우발사태계획(contingency plan)은 개연성과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처리하고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임. 이 계획은 내포하는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개발하며, 보통 차선책 또는 플랜비(Plan B)라고 부름**
- **MICE의 계획과정, 장소, 운영에 있어 어떤 차이나 취약성을 발견하기 위해 차이분석(gap analysis)을 수행하는데, 차이분석은 다음을 검토하는 것임**
 - 무엇이 위태로운가?
 - 무엇이 취약한가?
 - 무엇이 불확실한가?
 -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그 밖의 것은 무엇인가?
- **우발사태계획은 잠재적으로 발생하게 될 혼란을 고민함으로써 식별된 위험의 결과를 완화시키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사고의 잠재적 영향 평가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내·외부 예방책과 보호 장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 위험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고 적절한 자원,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우발사태 계획을 수립함
 - 만일 위험이나 위험의 결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너무 적으면 '회피'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avoidance)’라는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확인된 모든 취약점이나 불확실성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날씨, 장비, 조달, 참가자 문제와 같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경우를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 여유분, 추가 일정, 활동,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하는 대비책임**
 - 각 우발사태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실행의 영향을 설정함
 - 하나의 사고는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을 유도하거나 추가적인 사고를 양산하는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를 고려해야 함
 - 하나의 취약점과 그에 대한 우발사태계획의 양상이 전체 MICE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하고 통합시켜야 함
- **우발사태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예시)**
 -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자가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초청 연사의 발표 순서를 바꿔 진행할 수 있음
 - 옥외행사에서 악천후가 문제가 된다면, 텐트를 확보하거나 실내공간을 사전 확보
 - 전력이 중요한 경우 이동용 예비발전기를 준비하고, 만일 행사의 전원이 이동용 발전기를 사용한다면 여분의 예비 발전기를 확보
 - 비상 상황에 따른 인력,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우발사태대책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
- **우발사태계획의 항목이 확인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한과 규칙을 정하고, 또한 이 기한은 운영계획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함**
 - 우발사태대책은 MICE 추진 일정 동안 언제나 실행 가능하나, 텐트나 이동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어떤 항목은 MICE 실행보다 선행되어야 함
 - 우발사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발주처와 함께 우발사태계획을 확인하고 타당성을 확인해야 함



10. 위험 전가

(1) 체크리스트 항목

- A-3-2-1. 해당 MICE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검토하고,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행사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가?
- A-3-2-2. 부문별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및 책임 범위를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 A-3-2-3.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계약 내용에 따른 보험가입을 확인하였는가?
- B-2-2-4. 전시부스 참가자와 손실발생의 책임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위험(risk)의 높은 심각성은 MICE의 지속 여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위험 전가를 이용하여 MICE 조직에 미치는 막대한 충격을 회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위험요인을 유지하면서 MICE 조직 자체의 재원으로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전가할지를 결정할 때 위험의 심각성과 빈도를 고려하여 판단함
 - 낮은 심각성 / 낮은 빈도: 유지 ⇒ 수용 가능한 위험
 - 낮은 심각성 / 높은 빈도: 유지 ⇒ 예측 가능한 비용
 - 높은 심각성 / 낮은 빈도: 전가 ⇒ 높은 비용
 - 높은 심각성 / 높은 빈도: 회피 ⇒ 회피가 불가할 경우 위험 전가
- 안전관리자는 감당할 수 없는 손실에 대비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과실·부상·사망으로 인한 보상 비용 및 법적 합의 비용
 - 재산 손해나 중요 인력의 손실로 인한 대체 비용
 - 소송 또는 MICE 취소 비용까지 포함 고려
- 위험 전가는 단순히 잠재적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이 모든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음. 안전관리자는 MICE 위험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무엇이 법적으로 필요한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따져서 적절한 보험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MICE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다양하므로 안전관리자는 MICE의 유형, 목적, 범위, 프로그램, 관람객, 법적 의무, 스폰서, 인력, 공급업체, 행사장 등을 고려하여 보험을 가입해야 함
 - 인센티브 행사의 경우 여행프로그램에 대한 여행지연보상 등
- 국내의 경우 보통 행사종합보험에 가입하며, 보장내용은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 주차장, 생산물), 단체 상해, 동산 손해, 행사취소 등이나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약관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함
 -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기간 중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손해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행사 진행요원 및 참가자, 제3자의 인명피해
-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
- 행정안전부(2021)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보험 가입(인적 보험)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음
 - 보상대상: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 * 사망(1억5천만 원), 부상(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 원)
- 안전관리자는 모든 협력업체로부터 계약 내용에 명시된 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증서를 입수해야 하며, 해당 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이 보험증서는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재정 손실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에 이용할 수 있음

11. 보안계획

(1) 체크리스트 항목

- A-3-3-1. MICE 행사의 참가자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안(경비)인력을 산출하고 배치하였는가?
- A-3-3-2. 안전한 행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비 및 도구를 마련하고 배치하였는가?
- A-3-3-3. 행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보안(경비)인력에게 사고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A-3-3-4. 행사장의 보안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구축되었는가?

(2) 내용 설명

- 보안(security)은 위험, 손실 및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안은 피해 발생의 원인이 '인간의 행위'라는 점에서 안전(safety)이라는 개념과 구분됨
 - 보호 대상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하여 안전을 유지하려는 경우 보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보안의 역할은 예방, 개입, 관찰, 점검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MICE와 MICE 조직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
 - 보안관리는 보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인력과 장비의 공급, 선택, 배치를 다루고 적절한 명령의 수행과 감독 그리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지원함
- 보안계획은 손해, 피해, 부상, 손실, 악화로부터 사람, 재산, 이미지, 명성, MICE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됨



〈일반적인 보안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통제 · 허가 통제 · 침입 통제 · 행동 통제 · 군중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억제 · 비상사태 대응 · 법의 집행 · 경호 · 피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소유물 보호 · 공공 안전(참가자, 직원 등) · 경비 배치 · 감시 활동 · VIP 보호 등
---	---	---

- 보안계획은 안전관리의 한 측면으로 MICE 행사나 조직에 적절한 보호 사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과 장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따라서 어떤 지역, 활동, 사람이 안전한지, 특정 시간에만 안전한지, 취약한지 평가하기 위해 MICE 계획을 확인하고 행사장의 보안 인프라를 조사해야 함

〈보안 조사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통제 · 경고신호 · 감시장치 · 장애물/울타리 · 조경 · 대문(gate)/문(door) · 입·출구 · 지붕 · 복도 · 계단통 · 벽/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로/배수관 · 흡기/배기관 · 냉난방 환기시스템 · 전시물 · 금고/귀중품 보관실 · 분류/기밀문서 취급 · 통신망/컴퓨터 접근 · 조명 · 로비 · 엘리베이터 · 시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 · 서비스 인력 · 발송/접수 · 공공시설 연결 · 빌딩 돌출부 · 차량을 이용한 접근 · 주차장 · 하역장 · 보관구역 · 쓰레기 하치장 등
--	--	---

- 보안계획은 MICE 및 행사장과 관련하여 전반적이며, 높은 위험요인과 특별한 보안에 대하여 다루어야 하고 보안과 관련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함. 반면 그 계획은 변경 및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보안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다룸

- 위험요인: 주요 자산, 내재적/과거 위험, 위험한 상황/조건
- 접근통제시스템: 절차적, 물리적, 기계적, 전자적인 장애물
- 보안 인력: 공급, 절차, 명령 구조, 배치, 일정
- 사이트 맵(site map): 현장 계획, 제한 구역, 집회 지점, 내·외부 통로(접근/탈출), 인접 주변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비행장, 항만, 터미널 등)
- 감시 시스템: 인력, 전자 장비
- 경고 시스템: 탐지, 침입, 대응, 보고 절차
- 보안조명: 실내, 실외
- 커뮤니케이션: 대내, 대외
- 비상대응계획: 사고, 자연재해, 범죄, 테러리즘
- 외부 자원: 공공 안전기관(예.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의료시설, 공공시설(수도/전기/가스),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교통기관, 대사관, 해당 협력기관 등

- **MICE 유형에 따라 고유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안계획을 수립**
 - 컨벤션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연사나 참가자가 있을 수 있음. 매년 컨벤션이 열릴 때마다 출입 시설, 경호 인력부터 폭탄 탐지견의 수색, 모든 참가자의 검문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절차와 보호 수준이 요구될 수 있음
 - 무역전시회의 경우 고가 제품과 전용 장비를 전시하는 데 수백~수천 명의 참관객이 있으므로 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 **일반적으로 보안대책에 드는 비용은 보호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는 조건에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함**
 - 어떤 조직도 보안대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MICE의 특정 취약점, MICE 조직의 가용한 자원, 가능한 보호조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함
 - MICE 유형이나 특정 장소에서 개최된 기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투입 비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정보는 기존 유사 행사의 주최자, 관련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함
- **보안대책은 MICE 경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데 보안대책이 참가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보안대책은 안심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MICE 계획에 통합시키되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12. 보안인력 및 장비

(1) 체크리스트 항목

- A-3-3-1. MICE 행사의 참가자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안(경비)인력을 산출하고 배치하였는가?
- A-3-3-2. 안전한 행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비 및 도구를 마련하고 배치하였는가?
- A-3-3-4. 행사장의 보안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구축되었는가?

(2) 내용 설명

- **보안은 자산의 보호는 물론 안심과 안전한 MICE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력을 포함하며, MICE 유형과 범위에 따라 보안인력, 자원봉사자, 개최시설에서 제공하는 경비를 활용할 수 있음**
- **보안인력의 규모는 대응에 필요한 근거로 산정하고, 보안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할 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제안요청서와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보안업체를 선정함**



〈보안업체 평가 기준〉

업무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에 대한 장소, 일정, 의무사항 등 · 업무 수행 기준 · 보안 지휘 계통
인력선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 조회 (범죄 기록 등) · 보안 업무 경력 · 인성 및 태도 검사
교육 /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훈련 및 자료 · 현장 훈련 및 시험 · 장비 보유(유니폼, 경적, 단봉, 분사기 등)
운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배치 계획(24시간 운영) · 유니폼 및 장비 착용 · 업무 교대 및 비상 대응 절차
업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업무 실적(금액 및 횟수) · 해당 MICE 규모 이상의 실적
경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원 인력 수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재정 안정성 · 고용 관례 (임금, 복지 등)

- 보안인력은 항상 위험요인과 취약점, 절차적 필요조건, 대응 의무 및 개인의 품행을 포함하여 행사장과 예상 상황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보안 인력의 태도는 상황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안인력은 과도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한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함. 보안인력은 MICE의 목적과 의도에 알맞은 방식으로 고용 및 배치하여야 하며 안락한 이미지를 전달해야 함
- 보안계획 및 인력은 보안운영을 지원하지만 보안효과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보안장비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 카메라(사진, 동영상) · 양방향 무전기 · 확성기(megaphone) · 경적(horn) · 단봉/경광봉 · 분사기 · 손전등 · 시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 탐지기 · 금속 탐지기(MD, metal detector) · 엑스레이(X-ray) 검색 운반 장치 · 검사용 장갑 · 바리케이드(barricade) · 차단봉 (벨트형, 체인형) · 장비 오작동 경보 · 차량(골프카트, 사륜차) · 보호 조명
---	---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보안계획에 있어 사고 및 상황에 대한 문서화는 매우 중요함. 이는 향후 법적 소송이나 평가에 있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보안인력은 항상 문서화에 필요한 도구(클립보드, 카메라, 녹음기 등)를 소지하여야 함
- 가장 효과적인 예방적 보안장치는 접근 자격증명(비표 등)과 적절한 조명이며, 접근 자격증명은 MICE 행사에서 사용하는 우선적인 예방책임. 따라서 보안인력은 접근 자격증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되어야 함
- 모든 MICE 및 협력업체의 인력은 도난, 변조, 범죄 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증이나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보안조명은 침입자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활동, 구역, 주변, 취약 위치, 장비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적절한 보안대책과 인력 배치는 보호가 필요한 구역, 물품, 사람에 대한 취약성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보안 배치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본부 · 입장 구역 · 퇴장 구역 · 전시 구역 · 무대 주변 · 보관 구역 · 배송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수거 구역 · 제한 구역 · 식음료 준비 구역 · 냉난방 환기시스템 · 주변 지역 · 공공 구역 · 주차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소 · 장비 설치 · 순회 · 주요 자산 · VIP 및 미디어 구역 · VIP 개인 보호
---	--	--

- 보안인력 및 장비의 수량과 유형은 사람과 재산에 대한 식별된 위험, 행사장의 수용력과 필요조건에 따라 좌우되며, 배치는 일정과 보안인력이 배치된 구역, 위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력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라해야 함
 - 보안인력의 담당 구역, 행동, 업무 배정, 업무 수행과 관련된 규정,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지침은 계약하는 보안업체의 직무기술서와 위치 배정에 반영
 - 보안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지휘 체계와 보안 인력 간에 신중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적절한 사람에게 그리고 적절한 사람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현장 통신장비에는 전화, 휴대전화, 다채널 양방향 무선기, PA 시스템(장내 방송설비), 휴대용 메가폰 등이 사용되며, 프로젝션 스크린과 다양한 게시판은 보안의 일부가 되며 비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외부 커뮤니케이션 계획으로 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전파해야 할 참가자나 참관객을 위한 보안과 안전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포함해야 하며,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특별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절차는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보안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통합되어야 함



13. 사고처리 절차

(1) 체크리스트 항목

A-3-3-3. 행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보안(경비)인력에게 사고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MICE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행사장 내부에서 발생하며 행사장 인근 및 외부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

- MICE의 범위와 규모 면에서 관람객과 활동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고의 가능성과 개연성은 더욱 많아지고 있음.
- 오늘날의 세계는 폭력과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있으며 MICE와 관련한 사고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 시위 · 무질서 · 폭력 · 폭발 · 화재 · 피난 · 폭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 부상 · 인질/납치 · 사회재난 · 자연재난 · 재산피해 · 폭탄위협 · 테러리즘
---	---

• 보안인력은 경찰, 의료진, 구조대원은 물론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대처에 관여하게 되며, 보안인력은 대부분 사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사고보고서는 발생한 모든 사고나 상황에 대해 각각 기록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의 목적은 피해자나 피해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보장하고 사실의 정확성, 문서화, 평가, 증거,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있음

- 사고보고서의 내용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른 사고개요, 설명, 신원 확인, 연락처 정보, 증거물, 피해자 및 용의자의 상황을 포함하여야 함
- 사고보고서는 소송에서 법 집행과 법적 보호에 대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MICE 보안계획 및 절차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사고보고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며 사고와 동시에 현장에서 작성되어야 함
- 보안 인력은 필요한 준비물(사고 양식, 목격자 인터뷰 카드, 펜, 카메라 등)을 소지하며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이 필요함

• 사고 일지는 부상이나 사고의 패턴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매번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함

-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장 내 식음시설에서 음식 위생 문제가 있음을 추정
- 전시회의 특정 위치에서 반복되는 도난사건은 경비 배치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필요함

14. 재난재해

(1) 체크리스트 항목

- A-4-1-1. 행사 기간 중 감염병의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 A-4-1-2. 행사 기간 중 기상학적 재난의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 A-4-1-3. 행사 기간 중 사회적 재난의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 A-4-1-4. MICE 행사 기간 중 기술적 재난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가) 재난 유형

- 비상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은 인명 손실의 원인이 되고 인간복지에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며,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협하게 만들고 재산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국가나 개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의도나 능력을 말함
- 위협은 자연적, 인공적, 기술적 위협을 포함하며 행사장의 장소, 시기, 활동, 참가자와 관련됨
- 위협은 급작스럽게 또는 천천히 나타날 수 있으며,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상당한 시간 또는 짧은 시간에 걸쳐 발생할 수도 있음
- 위협은 행사장, 행사장의 인접 지역 또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지 행사장 접근이나 참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위협은 대재앙의 자연재해로부터 기상예보의 기술적 오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검토되어야 함
-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극심한 변동은 서비스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며, 심지어 MICE 행사가 취소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자연재난>

구분	위험요인
자연재난	생물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코로나19, SARS², MERS³, 전염병, 탄저병, 유행성 독감, 구제역, 광견병) · 감염 (동물, 곤충)
	지질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 산사태, 진흙사태, 지반침하, 해안침식, 눈사태 · 쓰나미(tsunami)⁴ · 화산
	기상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한파(급작스럽거나 지속되는 더위 또는 추위) · 화재 (숲, 산맥, 도시) · 홍수 (강, 돌발 홍수, 조수가 밀려들) · 비 또는 뇌우 (천둥, 번개, 폭우) · 눈 (눈보라, 얼음, 우박, 진눈깨비) · 폭풍 (열대성 저기압, 태풍, 강풍, 먼지/모래 폭풍)

2)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의 호흡기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다.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 까지 유행하여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이 사망하였다.
 3) 중동 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SARS와 유사한 바이러스다.
 4)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하여 해수면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큰 파도를 말하며, 쓰나미의 명칭은 항구에 불어 닥친 비정상적인 높은 파도를 가리키는 일본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재난〉

구분		위험요인
사회 재난	우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오염 · 통신 시스템 중단, 고장 · 기계 및 장비 고장 · 화재 · 연료, 자원 부족 · 유해 물질(위험물)의 유출/방출(화학, 생물학, 방사선) · 교통사고 (차량, 철도, 선박, 항공) · 수자원 통제체계 고장(댐, 제방, 저수지) · 수질 오염
	의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 · 폭탄, 폭탄 위협 · 시민 폭력, 공공 불안, 집단 히스테리(hysteria), 폭동 · 범죄, 무질서, 조직폭력 · 군사적 소란 (적의 공격, 전쟁, 폭동) · 침입 (경쟁자, 시위대, 난민) · 납치, 인질 · 심리적 위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 · 태업(sabotage)/파업(strike) · 테러리즘 (폭발, 화학, 방사선, 생물, 사이버)

• **테러리즘(terrorism) 행위는 사건이나 위협이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시민의 심각한 우려를 증가시키며 이점을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것임**

- 테러리즘은 그 본질이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지만 실제 사상자 통계는 적은 편임
- 테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정된 MICE 행사는 수많은 사람이 참가하며 감정적인 영향, 매스컴의 보도로 인하여 우선적인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점차 세계적으로 테러리스트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MICE 행사, 축제, 스포츠, 호텔, 클럽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
- 수신자 표기가 없는 소포나 승인되지 않은 소포 배달의 신중한 취급, 행사장의 사전 안전점검 실시, 은폐 구역의 제한, 적절한 출입 통제 등 안전 기준과 보안 예방책을 준비해야 함

• **국제적인 테러 단체**

- ‘알카에다(Al-Qaeda)’는 201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맨하튼의 세계무역센터(110층)와 국방부에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를 주도한 테러 조직
-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ah)’는 2002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를 일으킨 테러 조직
- ‘IS(Islamic State) 무장단체’는 민간인 학살, 인질살해, 노예제, 소년병, 장기매매, 유물파괴 및 밀거래를 자행하며 이라크 및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음. 2015년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가 북한산에서 IS 깃발을 흔들고 경복궁 앞에서 IS 모자를 쓴 채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추방당함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나) 재난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 지진 발생

▶ 비상시 전파

- 지진은 대부분 사람이 인지할 수 있으므로 지진 시 대처 요령 중심으로 전파
- 다른 요인에 의한 내부적 진동일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에 문의하고 인터넷/SNS 등을 통해 확인하며, 지진 발생이 아닌 경우에도 대피방송 및 대피유도

▶ 비상시 전달 내용

-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및 물건 추락의 위험으로 인해 진동 중 이동 금지
- 진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입구를 열어 비상 탈출구를 확보 (출구를 관리하는 스태프에게도 방송으로 전달)
- 안전과 관계없는 가스, 전기 사용금지
- 심한 진동의 경우 사전에 지정한 (야외)장소로 이동할 것 공지하고, 물건은 보상된다고 공지 (대규모 건물은 보통 진도 5-6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음)

▶ 피난 유도

- 진동으로 인하여 내부의 가스관 파열 및 전기 계통의 이상 등으로 화재가 발생 가능하며, 실제 지진 후 화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피난 유도는 화재의 경우를 상정하고 진행함
- 안전요원이 미리 대피로를 숙지한 후 안내함
- 피난 유도 방법
 - 머리를 숙이고 대피에 따르도록 지시
 - 상황 재확인 및 전파(레이저 포인터 · 마이크 등 적절한 장비 사용)
 - 재난 패키지 개방
 -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재해 약자의 경우 피난 보조
 - 돌발 및 갑작스러운 행동을 저지하고, 동요 및 패닉에 적극 대처
 - 배연 곤란 시 창문 파괴 등

☞ 태풍 발생

▶ 비상시 전파

- 태풍을 비롯하여 악천후는 대부분 사람이 인지할 수 있으므로 발생 사실보다는 대처 요령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전파
- 태풍으로 인한 호우 및 돌풍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위험임
- 야외 및 외부에 노출된 테라스나 옥상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지 전파

▶ 비상시 전달 내용

- 야외 및 외부 프로그램이 중지되었음을 고지



-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안전한 건물 안으로 이동
- 하수구나 배수로 근처 또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물웅덩이는 접근 자제하고 고지대로 이동
- 심한 바람/강우가 지나갈 때까지 실내에 있을 것을 고지
- 외부와 연계된 창문이나 출입구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 떨어져 있을 것을 고지

▶ **피난 유도 및 비상 구급**

- 야외, 테라스, 옥상 등 태풍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을 중지
- 프로그램 중지할 경우, 남아 있는 시설물이 날리지 않도록 빔출 등으로 고정 및 이동 조치하고, 전기사용의 경우 감전 위험이 없도록 플러그 뽑고 전기 차단
- AED 사용 등 구급 시행
- 소방 등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상황 수습 협조

 **화재 발생**

▶ **비상시 전파**

- 화재 발생 시, 담당 기관(경찰, 소방, 병원), 건물관리자, 주최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
(건물 주소, 화재원인, 비상상황 범위 등)
- 건물 안전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도록 요청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연락
 - 피해 정도를 보고하고, 대피 및 조치에 필요한 경우 요청
 - 전체 프로그램 중지 여부 건의
 - 계획 단계부터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일부 프로그램에서 전체 행사까지)
-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전파
 - 미리 작성된 메시지 전파(전광판, 휴대전화 메시지, 안내방송 등)
 - 참가자의 휴대전화를 등록하여 사고 시 대량 알림 문자 발송
 - 스태프를 통한 음성 전파
 - 전광판 등에 의해 전파
 - 외국인 참가 시에는 외국어로 전파
- 사고 시 또는 사고 예상 시 건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따름. 단, 상황변화 주시

▶ **비상시 전달 내용**

- 사전 준비된 전파 내용의 방송 안내
 - 대피 출구 지정
 - 안전한 집결 장소 지정
 - 지시의 원인 설명 (“A 지역이 혼잡하니 B 지역 출입구 이용하라” 등)
 - 재산 발생 손실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보상한다는 내용 안내
 -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켜둘 것을 당부
 -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비상시 사용 문구는 미리 작성하여 준비
- 외국인의 참석을 대비하여 외국어 준비

▶ 피난 유도

- 머리를 숙이고 대피에 따르도록 지시
- 상황 재확인 및 전파(레이저 포인터·마이크 등 적절한 장비 사용)
- 재난 패키지 개방
-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재해 약자의 경우 피난 보조
- 돌발 및 갑작스러운 행동을 저지하고, 동요 및 패닉에 적극 대처
- 배연 곤란 시 창문 파괴 등
- 집결 장소 통보 및 재집결 강조

15. 비상사태 관리

(1) 체크리스트 항목

- A-4-2-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행사장의 내·외부, 주변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A-4-2-2.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내부 보고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였는가?
- A-4-2-3.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외부 관련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 A-4-2-4. 행사장 및 시설 내에 비상 대피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거나 참가자에게 안내하였는가?
- A-4-2-5.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참가자의 대피 공간 또는 장소를 확보하였는가?
- A-4-2-6. 해당 MICE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게 비상대응 방안에 대하여 지침을 안내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2) 내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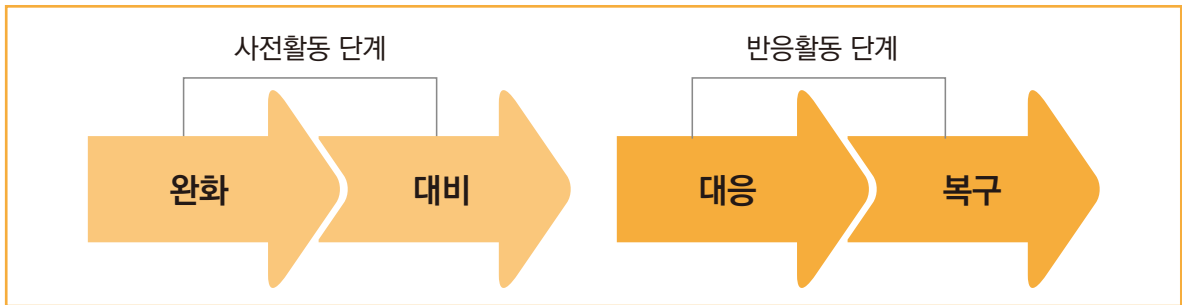
- **비상사태(emergency)는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생명이나 재산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여겨지는 상태나 상황을 말함**
- **비상사태 관리는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식별하고, MICE 행사 및 참가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며, 적절한 대응과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
 - 비상사태 관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서, MICE 조직과 참가자의 적절한 대응 능력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비상사태를 대비한 인력,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MICE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비상사태 관리는 4단계의 접근 방식으로서 보통 재난수명주기(life cycle of disaster)라고 함**

- 사전활동 단계는 완화(mitigation)와 대비(preparedness)가 있으며, 잠재적인 위협의 평가와 위협이 발생했을 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 반응활동 단계는 대응(response)과 복구(recovery)가 있으며, 어떤 사고나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착수하는 활동과 일단 사고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결과를 다룸

〈 **비상사태 관리의 범위** 〉



• **MICE 주최자는 주요한 비상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없으며 이는 관련 당국의 의무이지만, 안전관리자가 비상사태에 대해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최자는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구조반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이들은 효과적인 시스템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비록 주최자가 구조반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더라도 직원, 참가자, 협력업체 등 책임져야 할 구성원이 있음
- 둘째, 구조반이 사용하는 전술과 행동 규칙은 이미 효력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비상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비상사태 관리기능의 핵심 요소는 MICE 조직의 비상사태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됨

• **비상대책(EAP, emergency action plan)은 MICE 주최자가 비상대응 당국에 신속·효과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법, 대피자를 위한 집결 구역의 지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상 방송시스템의 사용, 현장 의료실 배치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

- 주최자가 준비해야 할 비상대책의 수준은 법적 책임, MICE 행사의 맥락, 가용 서비스 자원에 따라 영향을 받음
-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수용 가능한 대응 계획이어야 함
- 비상대책은 비상사태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자체적인 준비와 조치사항을 계획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 **비상대책의 고려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 이양 · 커뮤니케이션 계획 · 미디어 계획 · 비상 연락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 계획 · 대피 장소 · 대피 동선 · 의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계획 · 조명 계획 · 차량 계획 · 장비 계획
---	--	--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대부분의 집회시설은 비상대책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이 MICE 행사장이라면 MICE 비상대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만일 해당 시설로부터 비상대책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시설의 배치도, 비상구, 구내 보안 및 비상 연락망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시설담당자의 안내 및 현장 투어가 필요함

<MICE 장소에 대한 비상대책의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의 범위 · 보고 절차 · 통지 및 경고 체계 · 대피 정책 및 절차 · 비상 폐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소 절차 · 소재 확인 절차 · 구조 및 의료 책임 · 담당 인력 훈련 · 주요 연락처 목록
---	---

- **비상대책이 갖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비상사태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는 행사 인력과 임무가 부여된 행사 인력의 훈련과 연습의 부족임**
 - 비상대책에 역할이 부여된 모든 스태프, 보안인력, 운영인력, 안내인력은 비상 상황의 경우에 사용되는 장비와 행동 규칙을 시험하기 위해서 적절한 훈련과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훈련과 연습은 위기에 대하여 탈감각화 시키고, 개인은 자신의 할당된 책임 즉, 비상사태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훈련과 연습을 수행하는 것은 평가적 관점이 중요함. 이는 훈련을 통해 계획의 약점과 자원의 부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령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효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항상 연습, 훈련, 모의실험 후에 복명(debriefing)을 실시하여 본인의 스킬 수준, 결점에 대한 본인의 염려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완해야 함
- **비상사태 대응반은 긴급상황을 다루는데 가장 잘 훈련되어 있으며 내부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 이들을 의식적으로 포함시켜야 함**
 - 비상사태 대응반은 관할지역의 비상대책에 따라 다양한 공공 안전기관 및 민간 안전단체를 포함함
 - 기본적인 비상대응 서비스는 소방, 경찰, 의료 대책을 포함하며, 다른 대응 서비스는 MICE의 장소, 활동을 기반으로 추가할 수 있음(예. 교통당국, 유해물처리반, 기술전문가, 안전보건 인력 등)
- **MICE 현장에 비상인력과 장비의 배치가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소방서, 경찰서, 구급차가 구조를 위해 오는 대응 시간을 설정하여야 함**
 - 비상 서비스를 위한 접근 경로는 행사장 입구부터 개방적, 직접적이어야 하며, 비상 용도의 전용으로 운영하여야 함
- **비상사태 대응을 위하여 핵심적인 요소는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보호, 전달임.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비상상황의 존재와 특성에 대하여 긴급 구조반에게 통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운영하며, 영향을 받는 공중(관람객, 참가자, 협력업체 등)에게 취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야 함**
- **예상되는 비상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 잘 모르거나 확신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속성이 필요함**



- 즉각 대응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고 예측을 관리
 - 정보를 제공하고 오보를 방지
 - 적시에, 정확하게, 일관되게 그리고 이해가 쉬움
 -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를 유지
- **MICE 행사는 대규모의 인원을 제한된 공간으로 유인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피를 위해 행사장 또는 시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대피계획은 의사결정 절차, 참가자 커뮤니케이션 방법, 대피로 배치 및 상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효과적인 대피계획은 MICE의 본질, 공중의 특성, 동선 혼잡도, 출입이동, 대피방법, 유동인원의 수용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인력 준비 등을 포함해야 함
 - 일반적으로 집회시설은 비상사태와 대피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는 이를 직접 확인하고 대피계획에 반영해야 함. 특이한 장소나 미개발된 장소는 대피절차, 행동규칙, 피난방법을 포함하는 비상대책의 창의성이 필요하며, 이는 가능한 공공 안전당국과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일반적으로 비상사태에 있어 대피를 공표하고 실행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법적 책임이며, 안전관리자는 권한을 갖고 해당 시설과 함께 대피 활동에 따르고 조정하는 노력 의무가 있음
 - MICE 조직은 내부인력을 적정하게 대피계획에 통합하여야 함. 예를 들어 스태프와 보안요원은 대피통로를 따라 주요한 지점과 집결지에서 직접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장애인과 외국인의 특별한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도 포함시켜야 함

16. 법적 책임과 규정 준수

(1) 체크리스트 항목

- A-1-3-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인/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A-1-4-1. 행사장에서 잠재적인 화재 발생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A-4-2-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행사장의 내·외부, 주변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B-1-2-1. 참가자의 수집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였는가?
- B-2-1-6. 행사장은 모든 참가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고려하여 조성되었는가?

(2) 내용 설명

가) 법적 책임사항

- **MICE와 관련된 법률상의 의무는 MICE 프로젝트의 추진 및 활동과 연관되는 계약서 및 다른 법적 문서의 협상과 이행을 말하며, MICE 조직 및 주최자의 정책, 절차, 실행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계획과 이행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함**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MICE의 조직과 제작에 있어 MICE에 관여하거나 MICE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재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책임은 중요한 책무이며, 법률상 책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MICE의 책무를 수용하고 통제하고 관련된 의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법적 책임은 단순히 사람의 행위와 부작위(不作爲)²⁾, 재무적인 의무에 대한 법적 책무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와 부작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보상할 의무를 말함
 - 만일 어떤 사람이 명확하거나 암묵적인 의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는 데 부상이나 위험한 결과를 낳았을 때, 그 사람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계약 책임은 계약 내에 포함된 사람의 재무적, 행위적 의무를 충족하는 법적 책무이며, MICE 주최자는 합리적인 통제선을 넘지 않는 의무나 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배정하는 것이 중요함
 - 각각의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의 과실 행위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약속하여야 함
 - 계약 과정에서 수행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신의 행위, 적절한 물품이나 제공물에 대해 적합성과 안전성을 책임지도록 계약 조항에 이러한 책임을 적절하게 명시하여야 함
 - 호텔이나 케이터링업체와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상으로 이에 관한 모든 준거법에 따라 완전하게 허가를 받고 적절한 승인을 받으며 특정의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 표기를 해야 함
- 국내 법령체계는 헌법, 법률(국회),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국무총리령, 부령), 행정규칙(훈령, 예규/지침, 고시)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에 우선함
 -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자치 규칙(조례)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며, 규칙(지방자치단체장),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의 순서로 체계화됨
-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정 건물이나 장소는 MICE와 MICE 조직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MICE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MICE가 개최되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외국 전시참가자의 전시품 반입이 허용되는지, 어떤 임시 구조물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의료 체험에 대한 수준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제한
 - 어떤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지, 옥외광고물을 어느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소 제한
 - 음악 소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케이터링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업무 수행에 어떤 근로자가 허용되는지 확인 필요
- 안전관리자는 관련 있는 규제적 필요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사장, 협력업체, 관계 당국 등을 체크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MICE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음

2) omission.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작위(作爲)의 반대 개념이다.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 사생활보호법
· 임금채권보장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공공안전기준	· 위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흡연조례	
· 고용보험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특수효과 규정(예. 레이저, 불꽃놀이)	
· 건축 규제(예. 임시 시설물)		· 운송법	· 차량법
· 소비자보호법	· 환경보호법	· 도로/교통 차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화재안전/시설 규정	· 식음 서비스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제행사 관리지침		· 보건의료기본법	
· 세법	· 경비업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소방기본법	· 전자금융거래법	· 상표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환경정책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전기 규정	· 소비자 기본법	· 하수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경범죄처벌법		· 사회복지사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도로법		· 공연법	· 저작권법
· 청소년보호법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적용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훈령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MICE 전체가 중단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민사 혹은 형사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음
-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람객은 물론 참가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수 있으며 MICE 조직의 건전한 재정이 위태로울 수 있음

2) 규정 준수

- 규정 준수는 MICE와 관련된 법의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허가·인가·승인과 같은 문서, 접근 권한 및 재산을 나타내는 법적 문서, 다른 적용 가능한 법, 법령, 규칙을 수집하고 적용하며 유지하는 것을 말함
 -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함
 -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함
 - 승인(承認)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함. 행정청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意的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인가적, 허가적인 것이 있음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MICE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서류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 점유 허가 · 사업 면허증 · 보험 증서 · 동의서/승낙서 · 배너설치 승인 · 전기설치 허가 · 식음서비스 허가 · 주류 면허 · 안전관리계획 심의 · 불꽃놀이 허가 · 각종 허가/인가증 · 임시구조물 허가 · 보세구역 설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면허증 · 퍼레이드 이동 허가 · 퍼레이드 차량 허가 · 주차 허가 · 화약사용 허가 · 불꽃놀이 허가 · 전기안전 검사증 · 가스안전 검사증 · 구조물 안전 진단서 · 판매 허가 · 도로 폐쇄 허가 · 교통 제한 허가 · 옥외 광고물 허가
--	---

• 이러한 허가, 인가, 승인은 MICE와 관련된 활동과 사용을 관리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제기되는 활동과 사용을 보장하는 제어장치임

- MICE와 관련된 상품을 팔고, 상품 품질과 MICE 이미지를 통제하기 위하여 허가를 획득하거나 발급할 수 있음
- 잠재성이 있는 위험한 활동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이 포함된 행사는 참가자에게 관련된 위험을 알리고 MICE 주최자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함

• 허가나 승인을 하는 당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 등의 정부부처와 기관으로 필요한 법적 서류를 확보하고 요구하는 허가사항과 과정, 비용, 시간을 검토하기 위해 행사장소, 협력업체, 관련 당국을 확인해야 함

- 공공 자산이나 공간 사용 (예. 주차장, 공원, 공공건물)
- 길에 대한 공공권리 침해 (예. 차도, 거리, 보도, 중앙 분리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서비스의 이용 (예. 경찰, 교통 통제, 전력, 수도 등)
- 임시 구조물의 설치 (예. 무대, 텐트, 관람석)
- 드론 비행
- 폭죽 사용 (예. 실내 불꽃 신호, 야외 불꽃놀이)
- 공기주입 구조물의 설치 (예.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 주류 및 음식 판매나 서비스 등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MICE와 관련된 허가의 신청과 발급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며, 허가나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은 음식을 준비하는 지역과 쓰레기 관리시설의 검토를 지시할 수 있음
- 소방서는 실제 도면배치가 승인받은 평면도와 일치하는지, 특정 재료에 대한 불꽃 테스트로 안전한 사양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결정과 활동에 대하여 관련 계약서, 허가, 승인, 인가 등의 문서가 적법하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MICE 계획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MICE 개최에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획득함
 - MICE 개최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허락을 받아야 함
 - MICE를 개최할 때마다 허가 및 법적 문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고, 지역 당국의 긴밀한 협조와 교육을 통해서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킴

17. 산업안전 및 보건

(1) 체크리스트 항목

- A-5-1-1. 사업주(발주처 및 기획사를 칭함)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는가?
- A-5-1-2.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는가?
- A-5-1-3.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안전관리자는 MICE 참가자뿐만 아니라 MICE를 만들고 운영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에 관심을 두어야 함
- 모든 작업 공간과 작업장은 작업자 및 다른 사람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를 위한 법적 의무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주에게 고용인이 부상, 피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라는 명령이며, 고용인은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구상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의 의무가 있음
- 고용인은 불안전하고 비위생적인 상황을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확인하고 통제 및 예방책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MICE 주최자, 인허가 소지자, 도급업자, 장소제공자 모두가 자신의 고용인과 작업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안전하고 건강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참가자, 관람객, 자원봉사자까지 아우르게 됨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산업안전보건 일반적인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 강령 · 보호 복장 및 장비 · 호흡 보호용품 · 경고 의무 · 전기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훈련 · 낙하 방지 · 화재 예방 · 위해물질 취급 · 기계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마련 · 위생 · 작업장 폭력 · 매뉴얼 취급절차 등
--	--	---

18. 차별금지 의무

(1) 체크리스트 항목

B-2-1-6. 행사장은 모든 참가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고려하여 조성되었는가?

B-2-1-7. 행사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barrier-free)' 환경으로 조성되었는가?

(2) 내용 설명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음. 따라서 모든 MICE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지 못하며, 장애인을 고려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준수해야 함
-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의무는 장애인은 물론 인종, 종교, 나이, 성별, 신체적 기형에도 적용되며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채용 정책, MICE 주최자의 행위와 대응, MICE 마케팅까지 적용되기도 함
 - 관람객, 참가자, 협력업체는 MICE에 참가하기 위하여 특별 요구를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관여가 가능하도록 특별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음
 - 공간 배치(layout)는 MICE 관람, 참가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입·퇴장, 접근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현장 점검을 하는 동안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특성, 장비, 비상사태 절차를 신중히 검토
 - 건물에 대한 접근성은 해당 시설의 책임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은 MICE 주최자의 책임으로서 우선 주차, 입장, 좌석, 도구, 장비 및 공간 할당 등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입장객 누구나 편리한 행사장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행사장 이동 및 관람에 대한 물리적 장벽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안내 책자의 점자, QR코드를 통한 음성안내 등)의 장벽까지 제거하는 것을 말함
 - 행사장에서의 배리어프리 사례는 관람객 동선에서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계단 입구의 슬로프(slope)를 설치하는 것임



- **배리어프리는 모든 행사장에 적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의 제공기관과 제공자는 장애인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이 적용대상이며, 헬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나 문의 사항을 대비하여 수어·문자·음성을 통해 운영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 수단도 제공되어야 함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에 탑재되는 모바일앱은 키오스크와 동일하게 접근성 준수 설계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함
- **특별한 요구를 갖는 개인을 위해 특정 장애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들의 특별 요구를 확인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접근성에 대한 이슈 〉

배리어프리(barrier-free)	특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한 접근 및 기회 · 건축적 접근성 · 프로그램/커뮤니케이션 접근성 · 교통 접근성 · 시청각 및 보행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능력 장애 · 시청각 장애 · 언어 및 문해력(文解力) 한계 · 학습 장애 · 신체적, 종교적 제약
건축규정 준수	보조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 동선, 출입구 · 무대 및 좌석 · 음수대 · 화장실 · 주차 · 시청각 경고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자료 · 수화 통역 · 청각장애를 위한 통신기기 · 대체 자료(예. 녹음 문구, 큰 활자) · 청각 헤드셋 · 반려동물 편의 서비스

B. 업무부문

19. 행사장소 선정

(1) 체크리스트 항목

A-1-3-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인/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였는가?

B-2-1-5. 행사장 내·외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조치하였는가?

(2) 내용 설명

가) 행사장소의 수용 능력 검토

- 행사장소의 수용 인원을 확인하고 예상 참여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
- 장소제공자에게 해당 건물 최대 수용 인원을 반드시 사전 답사를 통하여 확인
- 대형 건축물의 경우 여러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장 선정시 동시 진행되는 행사가 있는지 확인 필요
- 행사장소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검토
- 과다인원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조정 및 인원의 분산 등 방법을 고려

나) 행사장소 접근성 검토

- 참가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
- 응급 차량의 접근성 확인
- 과다하게 차량이 몰리지 않는지 및 주차 수용력이 충분한지 검토
(과다한 차량이 몰릴 경우 사고위험이 있으며 비상 차량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다) 행사장소의 대피 안전성 검토

- 장소의 내·외부에 안전한 대피장소가 존재하는지 확인
- 입구(Entrance)와 출구(Exit)는 찾기 쉽고 안전할 것
- 비상시 안전한 출구가 존재하는지 확인
- 비상시 대피 시간 확인(5-10분 정도가 적정)
- 행사장까지 응급차량 및 응급요원의 접근 용이성 및 이동로 확보 여부 확인
- 비상 탈출구가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비상통로에 장애물 존재 여부 확인 및 제거
-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지 확인

라) 행사장소의 내부시설 안전성 검토

- 병목 현상이나 인원이 운집할 수 있는 곳의 확인



- 사람들이 모일 경우, 협소해질 수 있는 통로
- 계단,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병목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
- 안내데스크와 같이 사람이 줄을 설 수 있는 곳
- 인기 전시물이나 다과 등이 비치된 곳 등

• **전기 및 가스 사용되는 곳의 확인(발화 위험)**

• **옥외행사의 경우, 압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출입구 입퇴장 대책 수립**

- 공설운동장 등에서 공개 공연이 실시될 경우, 게이트를 열자마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쇄도하여 부상 등의 사고 우려
- 옥외행사 시 이를 감안하여 행사장을 선정하고 참가자의 출입 분산 등 조치 필요

마) **건물의 안전 시스템 확인**

• **소화기,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건축물의 안전 시스템의 작동 및 유지보수 여부 확인**

- 소화장비의 적정성, 비상 대피 유도등, 화재 경보(열, 연기) 시설 등 유지관리 현황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안내방송 장비 및 스피커) 등
- 셔터 강하 방식, 비상구 보안 잠금 방식 등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조건 확인**

- 휴대폰 수신 감도
- 비상전화 위치
- 휴대전화 이외의 통신체계 확인

• **응급 및 안전사고 대비 준비상황 확인**

- 심정지 등을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자동제세동기)
- 응급의료 장비 확인
- 구급차 도달 위치
- 재난 패키지 확인

20. 옥외행사장 선정 및 설계

(1) 체크리스트 항목

- A-1-3-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인/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A-4-2-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행사장의 내·외부, 주변 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B-2-1-5. 행사장 내·외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조치하였는가?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2) 내용 설명

가) 옥외행사 장소 선정

- 대형 행사는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행사장 주변에 위험요인 여부와 긴급상황 발생 시 관람객 등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집중호우, 폭우, 하천범람, 화재 등과 같은 돌발성 재해 발생 위험지역과 산간, 계곡, 경사지역, 천변, 교통혼잡 지역 등 위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인지 사전 검토
- 행사장의 동시 최대 수용인원 검토하여 수용대책을 마련
- 소음·불빛 등 기타 요인 때문에 행사장 주변 시설(아파트·주택단지, 축사, 병원, 보육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
- 실외에서 불꽃놀이, 폭죽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풍향에 따라 잔재물이 관객석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
-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소방차 진입 등 접근성을 검토

나) 장소 적합성 평가요인

- 대지 상태가 적절한가? 평평하고 마른 땅이 옥외행사장으로 적합하며, 경사지대나 습지는 피함
- 도로 및 보행로, 비상 출입구 등이 구분되어 있는가?
- 예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가?
- 비상시 구조대가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별도로 있는가?
- 비상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나 다리 등이 있는가?
- 근처에 옥외행사 소음으로 영향을 받을 건물이 있는가?
- 옥외행사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 자연적인 무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 일몰과 일출 위치는? 옥외행사 소음을 낮출만한 자연적 요소가 있는가?
- 호수나 강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있는가?
- 물, 하수, 가스, 전기 등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가? 접촉 가능성이 있는가?
- 위험물이나 고압배관, 가연성 가스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가?

다) 옥외행사장 설계 시 고려사항

• 수용 인원

- 행사장에 좌석이 배치될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은 좌석이 차지하는 공간과 비상 대피처로 인해 감소되며, 군집밀도 수를 이용하여 산정함
- 수용능력(관람석 기준) = 관람석 면적(㎡) × 6명(단위면적당 군집밀도)
- 관람석 통로 확보

- 관람석 세로방향 20석마다 폭 1m 이상의 가로통로 설치
- 관람석 가로방향 15석마다 폭 1m 이상의 가로통로 설치



- 관람석 맨 끝단과 관람석 경계 사이에 폭 1.5m 이상의 통로 설치
- 가능한 관람석 세로방향 통로를 출입구와 일직선 상이 되도록 배치

* 옥내 수용능력(관람석 기준)

구 분	고정식 좌석	임시 좌석	입석
수용면적	0.45㎡/명	0.3㎡/명	0.2㎡/명

• 옥외행사장 진입

- 옥외행사장 진입은 교통수단에 대한 계획 및 위치, 주차시설, 진입 도로에 관한 계획 등을 마련
- 행사장 진입로는 주차시설 위치에 최대한 여러 군데로 분산하여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함
- 진입로는 최대한 단순하고 찾기 쉽도록 하며 교차지점을 피하여 직선으로 유도

• 옥외행사장 입구

-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는 계획 마련
- 입구와 관련된 설계 및 위치는 필요한 입구 수와 위치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게 맞게 설계
-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출입구의 각 모서리 등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마련
- 출입로의 모든 문은 손잡이로 열리거나 수평 압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밖으로 열려야 함

• 관람객 시야

- 관중이 무대 중앙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람객과 무대 사이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요소 제거
- 최대한 관람객 시야를 넓혀 관람객이 무대 앞으로 몰려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 비상 탈출구 및 대피

- 행사장에 필요한 탈출구는 예상 수용 인원과 행사장 구조를 고려하여 대피 소요 시간을 파악
- 행사장 담장에 비상 탈출구를 마련하고 관람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출구 안팎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 안내사인 설치

- 실내 및 상설 행사장의 경우 비상구, 소화기 위치, 입구, 주차장, 소방차 진입로 등의 안내사인이 설치된 것처럼 옥외행사장에도 필요한 안내사인이 설치되어야 함
- 안내사인은 안내 및 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비상시 관람객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 시간의 어두울 때를 고려하여 조명이 들어오도록 설치
- 현장상황을 알리는 상황판을 설치하여 옥외행사 예상 소요시간 및 협조 사항을 알려주고 관중의 질서유지를 유도

• 무대 주변의 관람객 안전관리

- 흰색, 적색의 테이프나 야광테이프로 관람석과 무대와의 경계선을 표시
- 관중이 출연자를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려나오는 과정에서 압사 사고 및 구조물의 붕괴 및 추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적절한 예방이 필요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가급적 지정 좌석제를 마련하고, 안전요원을 무대 앞쪽에 충분히 배치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
- 무대 주변에는 옥외행사의 특성상 구조물이나 스피커, 조명기기 등의 위험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의 추락위험이나 감전, 소음 등으로 무대 주변 관람객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21. 전시부스 설치 및 시공

(1) 체크리스트 항목

- B-2-1-2. 행사장 조성 시,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였는가?
- B-2-1-4. 행사장 조성 시, 작업장에서 시공/설치 작업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B-2-2-1. 행사장의 시설 및 전시공사를 총괄하는 안전담당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배치하였는가?
- B-2-2-3. 협력(시공)업체/독립부스 참가업체와 안전관리와 책임범위를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 B-2-2-4. 전시부스 참가자와 손실 발생의 책임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 B-2-2-5. 부스·무대 및 구조물은 하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였는가? 만일 안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는가?
- B-2-2-6. 무대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하여 콘솔과 무대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 상태의 안전성을 점검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작업시 일반 사항

- 장소제공자가 규정한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반드시 착용
- 행사장 구조물은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는 것을 권장하며, 벽면이나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과 비상구 등 소방설비, 비상구, 전기(EP) 출입문 및 화장실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면 개방하여 시공함
- 전시부스 통로는 3m 이상으로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하고 통로 내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전시품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행사장 통로 바닥에 최소 30cm 간격, 최소 500mm x 500mm 이상 크기로 대피로 표시를 제작 부착하여 참가업체와 참관객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행사장 칸막이 보호선(노란색) 내 전시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호선 안쪽에는 화물 등 적재 금지
- 행사장치물은 구조상 안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물로 시공해야 하며, 부스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계산 및 감리를 진행함
- 목재(각목, 각재류 포함), 천, 기타 방염대상 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기관(관할 소방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성적서 또는



-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방염 도료는 백색 수성 도료를 사용함
- 전시장 내·외부에서 시멘트 및 석면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 금지

• **위험물 작업 및 고소작업**

- 전시장 내 고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고소작업 장비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름
- 고소 작업대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닫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금지
- 이동식 사다리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의 경작업과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음의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함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사다리 작업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이상~2m미만인 경우,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 금지**

• **사다리 작업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2m이상~3.5m이하인 경우,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과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금지**

• **전기작업 안전수칙**

- 전기시설 전문가(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이외에는 전기 작업을 금지
-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만지지 않으며 젖은 손으로 전기장치를 절대로 만지지 않아야 함
- 모터 등 전기장치에 스파크나 연기가 나면 전기를 차단하고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
- 전선 또는 전기기구에 물건을 걸어놓지 않고 전선을 운반할 때 바닥에 끌지 말아야 함
-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압전선에는 위험 표지 부착

• **장비 및 장치의 하역과 적재**

- 작업장 및 통로 안전 작업을 위한 조명 확보
- 작업통로의 공간 여유 폭 확보
- 지게차 하역 시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벨 작동
- 운반용 차량의 평지 주차
- 분야별 장치에 대한 구분 및 표기 부착 사용
- 장비나 장치는 침하되지 않는 기반 위에 적재
- 차량 이용 운반 시 흔들림을 방지하고 편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적재
- 소화전이나 피난통로에 장비나 장치 적재 금지

22. 구조물·무대·시스템 설계 및 시공

(1) 체크리스트 항목

- B-2-2-1. 행사장의 시설 및 전시공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담당자(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배치하였는가?
- B-2-2-3. 협력(시공)업체/독립부스 참가업체와 안전관리 및 책임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 B-2-2-5. 부스·무대 및 구조물은 하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였는가? 만일 안전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는가?
- B-2-2-6. 무대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콘솔과 무대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 상태의 안전성을 점검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설치 및 운용 안전 수칙

- 임시 조립 구조물은 구조물의 설계, 설치, 시공 및 해체가 신속하고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함
- 관람객의 몰림 현상 및 바람으로 인한 수평, 수직 및 동적 하중을 견뎌내야 함
- 외력에 의한 구조적 파손, 화재, 폭발 또는 화학물질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단계에서 고려
- 외부 및 내부 작업 차량 충돌에 의한 붕괴를 막기 위해 도로 및 차량 진입 구간에 인접한 구조물은 차량 등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가설 구조물의 지지부는 균열, 산화, 마모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구성부품으로 시공
- 구조물 일부를 구성하는 구조물용 부재는 사용 중에 제거되지 말아야 함
- 임시 조립 구조물의 하중, 규격, 용량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 금지

• 지반 및 무대바닥

- 구조물의 적용 하중이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설계된 기초부를 통해 지지
- 구조물에서 작용하는 집중하중은 강재 기초판에 작용하는 허용 하중보다 작아야 함
- 높은 하중이 발생하는 지지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충분히 분산시키기 위해 격자 형태의 버팀목을 설치
- 무대바닥은 기초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돌출, 변형 등이 없어야 함
- 무대 바닥으로 쓰이는 재료는 온도나 습도 등에 의해 변질 및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내열성, 내습성이 강한 재료로 구성되어야 함
- 설치 현장에서 지지부의 위치를 결정할 때 부동 침하 등 지반이 약한 부분은 피해야 함

• 무대와 시스템(조명, 음향 등) 설치 안전 수칙

- 조명기를 고정하는 클램프(clamp)는 공구를 이용하여 최대한 견고하게 설치
 - * 클램프: 작업을 할 때 재료나 부품을 고정하거나 접촉할 때 사용하는 공구
- 바닥조명 또는 스트립 라이트 등의 조명기구류는 난연 또는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바닥 보호용 판 위에 설치해서 사용
- 조명기기를 매다는 경우 추락 방지용 안전 고리를 부착하고 조명의 무게가 지지 프레임의 허용



-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부하와 접속되는 케이블 및 커넥터는 실외형을 사용하고 부하와 연결 커넥터는 콘센트와 플러그가 완전하게 접속되는 제품을 사용
- 바닥 배선용 전선 등은 공연자, 장비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절연이 가능한 보호 덮개로 덮어야 함
- 스피커를 매다는 경우, 지지 프레임에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장치를 매다는 경우, 무게에 적합한 와이어 로프(철사)를 사용하고 하중을 고려하여 설치
- 장치를 조립할 기둥 및 받침대는 장치의 무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무대에 견고히 고정
- 무대장치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어야 하고, 적절하게 보강 및 고정되어야 하며, 출구와 출구로 가는 이동통로에 대한 시야 방해가 없어야 함

23. 프로그램의 안전성

(1) 체크리스트 항목

- B-3-1-7. 만일 위험한 도구나 특수효과를 사용하는 무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B-3-1-8. 전시 부스별 전시물, 시연(작동), 체험 등에 대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 조치를 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프로그램의 제작 요소는 조명, 음향, 영상, 특수효과 등으로 프로그램 연출에 사용됨. 참가자 안전의 관점으로부터 안전관리자는 평가하여야 하며 제작 요소와 관련된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 또는 불안한 케이블과 전선 · 불안정한 설치 · 부적절한 공중 매달기 ·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음향 수준 · 관련 시스템이 동기화 문제 · 미숙한 기술 · 미숙련자 투입 · 부적격한 공급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 지원 부족 · 불꽃놀이의 안전 · 특수효과 사용 · 알려지지 않거나 놀라운 요소 · 장비 및 설비 고장 · 장비 및 시스템의 미작동 · 전원 연결 허술 · 부적합한 반입/반출 일정
---	---

- 특수효과는 레이저(laser), 불꽃, 낙하, 발사, 강한 바람, 연무(fog) 등이 있으며, 특수효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 유사격의 협력 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모든 특수효과의 범위와 특징을 모든 공연자, 공급자, 제작 인력에게 고지해야 하며, 제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특수효과에 대한 경고를 안내해야 함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레이저는 시력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레이저와 섬광등 조명은 간질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사전 경고를 알려야 함. 미세한 색종이 조각 발사는 잘못된 타이밍과 겨냥으로 미세 조각이 사람의 눈에 들어갈 수 있고 음식이나 음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은박풍선은 전기 전도가 있어 전깃줄에 닿는 경우 전기합선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애드벌룬이나 풍선에는 헬륨가스를 사용해야 함. 가끔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헬륨가스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며, 수소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기체로 풍선이 터지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안전관리자는 헬륨가스의 주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불꽃놀이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고 행사장 인근의 민가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또한 불꽃놀이 장치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함
- 전시참가자의 부스에 설치된 전시물을 작동하거나 시연을 하는 경우, 관람객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함. 특히 화염이나 열이 발생하는 전시품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 전시물은 화상이나 부상을 발생시킬 수 있음

24. 행사장 시설

(1) 체크리스트 항목

- B-2-1-1.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장소제공자와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B-2-1-5. 행사장 내·외부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조치하였는가?
- B-3-3-1. 연회장 내·외부 시설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시설 특징 파악

- 시설안전 점검기록 확인을 통한 특이사항 파악 및 대응책 마련
- 추락, 미끄러짐, 충돌 등 시설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위험요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

• 행사장 안전관련 시설의 확인

- 공지사항 전파를 위한 방송장비 현황 확인
- 대피 유도등,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구비 현황 확인
- 비상구, 소화기, 소화전, 심장제세동기, 완강기, 비상벨 위치 및 사용 방법 확인
- 통제 장비 및 유무선 통신망 확인
- 환기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환기구 물건 적재 여부 확인
- 방화문 개폐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정전 대비 예비발전시설의 작동 이상 유무 확인
- CCTV 등 안전 감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가시설 점검 확인

- 설치 예정 중인 가시설의 추락 및 붕괴 위험성 검토
- 야외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간 거리 이격 및 통행로 확보를 통한 인파 분산 유도
- 가시설 설치 중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및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 철 구조물, 펜스, 가벽 등 설치 가시설의 구조 안전성 및 파손 여부 확인
(강풍, 지진, 관람객 부주의 또는 떠밀림에 의한 충돌 또는 낙상 가능성 검토)
- 대피경로안내 표지판 및 위험요소 주의 안내 표지판, 보호장치 설치 여부 확인
(미끄럼 주의/머리조심/감전주의 표지판, 모서리 충돌방지 보호쿠션 설치 등)
- 소화기, 소화전, 심장제세동기 등 방재/안전장비 비치 여부 및 장소, 사용방법 확인
- (실내) 피난 유도등, 비상구 유도등의 정상 작동 확인
- (실외) 크레인, 이동식 장비 등 대형 장비의 안전성 사전점검
- (실외) 행사장 시설물별 50m 간격으로 소화기 비치

25. 운영인력

(1) 체크리스트 항목

- B-3-1-3. 행사장/시설의 공간 규모와 참가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배치하였는가?
- B-3-1-4. 해당 MICE 행사에 참여하는 운영인력에게 행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2) 내용 설명

가) 안전관리 교육

- MICE 행사 및 프로그램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운영요원은 안전관리 교육이 필수적임
- 필요한 안전 지식의 습득과 교육은 책임자와 운영요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재난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
- 안전관리 교육 내용
 - 출입구 위치, 소화기/알람 위치, 참여자 이상 행동시 보고, 이상 행동 참여자 통제(금지구역 진입 등)
 - 구간별 최대 수용 인원, 비상통로 통제 및 관리, 행사장/프로그램 위험요소
 - 주요연락처, 비상시 행동요령
 - 현장도면 숙지, 위생 및 편의시설 숙지, 프로그램 숙지, 참가자 상태 모니터링
 - 통로 및 출구 통제, 언론 인터뷰 금지 등

나) 안전요원 배치

- 명령체계와 관련한 안전요원의 조직도를 작성하고 총괄 책임자를 선임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안전요원의 임무와 점검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
- 화재 발생시 응급대처요령, 비상대피 및 폭파 위협에 대처,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주차장 안내요령 등에 대한 교육 진행
- 옥외행사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별 조치사항을 계획하고 이들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및 안전관리자를 훈련하여야 함
- 안전요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채용 후 일정기간의 교육과 비상대피훈련을 받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옥외행사 위험성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요원의 숫자를 파악하며 군중관리와 관련한 위험성 정도를 수행할 때는 옥외행사장의 각 구역 현황 및 관중 규모와 성향에 대해 충분한 점검 필요
- 주 출입구, 현장 테두리, 통제선, 통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 노점상 단속 등의 중요도 순으로 인원을 배치
- 안전요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하되, 모든 관중 및 다른 운영인력과 자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임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 옥외행사 안전 관련 사전 점검사항을 실시
 - 현장 도면을 잘 숙지하여 관람객에게 필요한 정보(응급처치, 위생시설, 편의시설, 기타부대시설 등)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옥외행사 입장 및 퇴장 시 관중 통제 및 자리 안내, 옥외행사장 내 다양한 시설로 이동하는 관중의 원활한 흐름을 관리
 - 관중의 안전한 분산 배치 및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중 상태를 점검
 - 통로 및 출구를 통제하여 안전한 진행을 유도하며, 좌석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통제
 - 행사 진행 중 화재 및 테러 발생을 고려한 비상 대피로를 숙지하고 관중의 안전한 대피 수행

26. 군중 관리

(1) 체크리스트 항목

- B-3-1-3. 행사장/시설의 공간 규모와 참가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배치하였는가?
- B-3-1-5.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참가자/관람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동선을 확보하고 점검하였는가?
- B-3-1-6. 1,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MICE 행사의 경우, 참가자/관람객의 통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군중은 특정 시간, 특정 공간 내에 특정한 이유로 함께 모인 많은 수의 개인을 말함. 군중을 관리하는



것은 군중 속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군중관리와 군중통제는 상승효과를 주며 다음과 같음

군중 관리	군중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특성 및 행동의 이해 · 입장과 퇴장 · 시설 및 서비스 · MICE 공간 및 동선 · 프로그램의 배치와 관람동선 · 동선 배치(강제동선, 유도동선, 자유동선) · 줄서기 및 대기라인(차단봉 포함) · 감독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 통제 · 경계선(방어벽, 울타리, 차단봉 등) · 커뮤니케이션(안내방송 등) · 경고 사인 · 행위 금지 · 안전 인력 배치

• 군중관리계획은 참가자의 규모와 MICE의 유형에 따라 입구와 출구 시설, 필요 공간을 할당하며 참가자나 관람객의 예상되는 이동과 행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유사 행사가 개최됐던 시설을 사용한다면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참가자 관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참고함

• 군중 관리에서 군중의 규모(size)와 밀도(density)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 대부분 치명적인 행사장 참사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대부분 부상과 사망은 군중의 압박, 발을 디딜 틈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함
- 과잉수용은 공황, 폭력, 부상, 법적 책임의 위험을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

• MICE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에서 통행 흐름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위험할 수 있고 군중이 많고 밀도가 높을수록 이동은 더욱 위험성이 높아짐

- 행사장의 배치와 프로그램은 특정 시간대에 대규모 이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MICE 활동과 프로그램의 주의 깊은 배치는 특정 구역의 혼잡을 줄이고 다른 구역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줌
- 군중 이동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회피 대상	준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된 입장과 퇴장의 충돌 · 퇴장 동선의 집중 · 교차 및 역방향 흐름 · 병목 및 혼잡 지점 · 부정확한 수용력 산정 · 부적절한 통행을 막는 장벽 설계 · 잠겨있거나 폐쇄된 출구 · 가파른 경사지, 경사로,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 및 퇴장 인원 측정 · 계량기로 측정된 유입 · 이동 및 순환을 위한 적절한 공간 · 동선 유도를 위한 안내요원 배치 · 다중 분산 동선 및 출구 · 분리 이동을 위한 일방통행 시스템 · 모니터링을 통한 수용력 규정 ·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 안전관리자는 대기행렬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대기라인에서 군중 밀도와 압력, 규모, 지속 기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불평부터 위험한 군중 이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적절한 분리 도구(차단봉, 일시적인 펜스 등) 또는 운영요원으로 대기라인을 만들어 안내하여야 함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위의 대기라인을 피하고, 등록대의 대기라인은 입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치해야 함

27. 참가자 동선 및 입·퇴장 관리

(1) 체크리스트 항목

- B-1-1-1. 현장 등록 시, 동시에 몰리는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록 데스크(부스)와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B-1-1-2. 현장 등록 및 행사장에서 참가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고지 또는 안내하였는가?
- B-3-1-1. 모든 참가자의 행사장 및 시설의 출입 동선은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B-3-1-2. 무대를 사용하는 VIP, 연사, 출연진 등의 무대 등단 및 퇴장 동선은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B-3-1-3. 행사장/시설의 공간 규모와 참가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배치하였는가?
- B-3-1-5.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참가자/관람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동선을 확보하고 점검하였는가?
- B-3-1-6. 1,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MICE 행사의 경우, 참가자/관람객의 통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참가자 관리는 참석한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도착부터 출발까지 MICE에서 참가자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임
- 안전관리자는 참가자의 도착 계획, MICE 내에서 예상되는 참가자의 이동 흐름과 집결, 행동 양식을 통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MICE 참가자에 대한 리스크는 이동, 행동, 고객 서비스의 혼합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참가자와 관련된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출발 방식 · 입장 통제 미흡 · 혼잡/과다 수용 · 한계 수용력 초과 · 고밀도 참가자 · 참가자의 교차 이동 및 역이동 · 통제 장비 고장 · 비효율적 등록 및 매표 시스템 · 비효율적 좌석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행동에 대한 무관심 · 높은 수요의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비효율적 배치 ·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 참가자 혼란/공황 ·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한 지침 · 통제 불가능한 대기줄 ·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 · 부적합한 시설 등
---	---

- 입장시스템은 MICE의 종류, 활동, 참가자에 따라 다양한 입장 통제 및 자격인증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며, 자격증명(출입증)의 종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종류	대상	
인원	관계자	등록 출입증	조직위원회, 운영인력(안내, 진행, 도우미 등), 참가자, 자원봉사자, 안전, 미디어
		임시 출입증	운영인력, 참가자, 공연자, 미디어
		일일 출입증	참가자, 공연자, 미디어, 시설관리, 공무, 의전수행
		행사용 출입증	공연자
	귀빈	VIP 출입증	정부 고위관료, 공공기관장, 단체/협회장 등
차량	관계자	상시 출입증	조직위원회, 행사운영, 참가자, 안전, 보도
		임시 출입증	참가자, 공연자, 보도
		일일 출입증	참가자, 공연자, 보도, 시설관리, 공무
	귀빈	VIP 출입증	정부 고위관료, 공공기관장, 단체/협회장 등

- 참가자나 관람객은 특정 입구를 통해 특정 시점에 입장하고, 특정 출구를 통해 특정 시점에 퇴장함. 이러한 보행자의 통행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는 응급 상황은 물론 일반 상황 모두에서 입장과 퇴장 방식, 줄서기, 인간 행동 패턴을 포함한 통행 흐름을 이해하고 예상해야 함
- 안전관리자는 참가자 수를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절차적인 전략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장과 퇴장에 대한 이슈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입장 및 퇴장에 대한 이슈는 다음과 같음

입장 이슈	퇴장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객 특성 · 입구 배치 · 용도별 개찰구 운영(개인, 단체, 노약자 등) · 매표 및 등록(사전등록자, 현장 등록자) · 입장 확인(티켓, 출입증) · 입장 통제 · 입장 대기줄 관리 · 대기 시간 · 대기 밀도(대기 중 붐비는 정도) · 재입장 정책(허용 여부,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장객 감정상태 · 출구 배치 · 출입증 회수 여부 · 출구 수용력 · 퇴장 방식(정상 시) · 퇴장 방식(비상사태 시) · 출구 형태(평지, 회전문, 계단 등) · 재입장 정책(허용 시 표시 방법) · 퇴장 시간 · 보관품 반환, 주차 확인 등

- MICE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 흐름을 통제하고 참가자와 참관객이 행사장에 입·퇴장 하거나 행사장 내에서 활동을 안내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차단봉, 펜스, 방어벽(barricade)을 활용할 수 있음
 - 보통 행사장 정문은 입구와 출구가 동시에 설치되며, 입구는 참가자의 원활한 입장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출구보다 넓게 설치함
 - 출구는 입장객과 퇴장객이 충돌하지 않도록 입장 금지(no entry) 또는 출구 전용(exit only)의 표시 체계를 활용함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입구는 서비스 시스템(예. 등록, 매표, 표 수거, 자격인증 등), 처리 비율, 예상 인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이 할당되어야 하며, 통상 개찰구의 처리능력은 1인당 3초를 기준으로 산정함
- VIP 방문객, 초청 연사, 공연자의 도착과 행사장 내 이동을 위해 특별한 주의와 시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용 입·퇴장 경로와 출입구를 사용하는 동선을 마련해야 함
- 퇴장 방식과 수단은 입장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만일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퇴장 방법이 관람객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함

28. 행사장 주변 관리

(1) 체크리스트 항목

- A-1-3-3. 행사장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A-1-3-4. 만일 행사장 주변의 교통 및 군중통제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지자체/경찰서 등)과 협의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 A-1-3-5. MICE 행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장 주변의 방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행사장 외부

- 행사장까지의 경로안내를 위한 유도등, 입간판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
- 도로 주변 교통사고 방지 및 통행 유도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 수용 가능한 주차 대수, 응급구조 차량의 주차 공간 마련 및 동선 확보 여부 확인
- 주차장 입구 및 출구 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차량 진출입 관리
- 통행 흐름을 방해하는 인근 노점 및 불법 상업행위 단속
- 대형 현수막,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통행 방해요인 확인
- 행사장 주변 공사 현장, 기타 위험물 취급 현장을 고려한 통행 유도

• 행사장 내부

- 행사장 진입 차량 질서유지 계획 및 교통 관리 대책 수립
- 통로 폭, 경사도를 고려한 동선 설정
- 수용 가능 주차 대수 확인
- 응급구조 차량 주차 공간 및 이동 동선 확보
- 안내데스크, 출입구 등 특정 지역에 인파가 쏠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운영요원 추가 및 전환 배치
- 입장시간 및 출입문, 비상구 위치, 관람시 안전 유의사항 등 안내방송으로 공지
- 통행 흐름을 고려한 안전 울타리 차단선 설치, 안전요원 배치구역 조정을 통한 인파 정체 방지
- 이동 중 촬영 행위 등 정체 유발, 통행 흐름 방해 행위 통제



•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

- 교통관리 계획안은 옥외행사장 접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며, 옥외행사장 밖의 교통 체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수립
- 안내 표지판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경찰 및 도로담당기관에 사전에 협조를 받아야 하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로 변경 및 그에 따르는 영향력에 대해 사전 고지
-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진행요원에게는 야광 장비나 우비와 같은 신체 보호 장비를 제공
- 교통정리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지점과 운전자 시야에 보이는 위치 선점 같은 부분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대형 옥외행사의 경우 교통관리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경찰, 주차관리, 교통안내표지판 계약업체, 도로관리부서,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
- 적절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 차량 수요를 계산
- 일반차량 및 버스 주차장의 경우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반사되는 안내표지판과 숫자/글자판을 부착하여 행사 종료 후 혹은 비상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일반차량과 버스 주차장은 따로 분리하도록 하며 대형 옥외행사의 경우 주차장에서 옥외행사장까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본인 차량의 위치 확인 및 이동통로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노점상 관리

- 출입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관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위치, 크기, 공간에 대한 요건을 준수
- 동선상 위험한 곳이나 관중이 집중되기 쉬운 옥외행사장 출입구 부근에는 노점 설치 불가
- 도로의 노점배치는 도로 한쪽에 배치하여 옥외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 노점상은 옥외행사장의 출입구 등 옥외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구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
- 옥외행사장 내부에는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 실시

29. 편의 서비스 및 폐기물 관리

(1) 체크리스트 항목

A-2-2-3. 행사장 폐기물은 공중위생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B-2-1-7. 이번 행사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barrier-free)를 고려한 환경으로 조성하였는가?

(2) 내용 설명

가) 편의 서비스

- MICE 주최자는 참가자와 참관객에게 배려와 편의를 느끼게 하는 공간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불만, 혼란, 불안과 같은 군중 통제 문제와 고객 불만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안전관리자는 이러한 편의시설 및 안내사인의 배치가 참가자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용가능성과 적절성을 확인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대기 장소 · 등록 데스크 · 종합 안내소(리플릿, 행사안내, 통역 등) · 물품 보관소 · 물품 대여소(유모차, 휠체어) · 유실물 보관소(분실물, 습득물) · 유아휴게실 또는 수유실 · 화장실(기저귀 교체실 포함) · 은행/자동현금지급기(ATM) · 의료실/응급처치실(구급차 포함) · 이동파출소 · 이동소방서(소방차 포함) · 불편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카페 · 무료 충전소 · 노약자 휴게소 · 미아보호소 · 식음 판매시설 · 통신 센터 · 흡연 구역 · 셔틀버스(외부주차장, 인근 터미널 운행) · 비즈니스 센터(business center) · 주변 관광 안내 · 휴게 시설 · 반려동물 보호소 · 우체국/택배 서비스
--	--

나) 폐기물 관리

- 폐기물 관리는 MICE에서 만들어진 모든 고체 및 액체 폐기물에 대한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계획임
- 폐기물이 어질러진 행사장의 경우 보건 위험이 되거나 사고, 부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한 폐기물 통, 효과적인 청소와 청결, 세심한 행사장 유지, 적절한 폐기물 처리계획이 필요함
- 폐기물 발생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위생 및 환경보호 규정, 적절한 폐기물 계약, 폐기물의 합법적 처리를 준수해야 함
- 폐기물 처리는 청소인력이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집하장에 집결시키고 이를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행사장의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활용함
-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는 벌레 침입, 화재 위험과 비위생적인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폐기물 및 가연성 물질은 텐트, 구조물, 비상구 근처에 보관하지 말아야 함
- 폐기물의 보관구역은 포장재, 장비, 물품, 과잉 재고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유지되어야 하며, 이 구역에 대한 접근은 보안상 이유와 안전 예방책으로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함
- 식음 서비스 구역이나 위생시설 구역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음식 쓰레기는 단시간에 부패할 수 있으며, 해충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임.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의료 폐기물은 응급상황에 의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야외 행사장에서는 오염지역의 청소 및 청결이 필요할 때 곤충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폐기물 통의 뚜껑을 덮는 등 해충 방제가 중요함



- 진드기 매개 질병이 유행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공중보건당국과 협력하여 질병 매개체(해충, 새, 개, 들쥐, 진드기 등)를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애견이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행사장 입장 전에 주인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보관소를 활용하는 시스템도 필요함
- **사전 점검은 행사장 또는 건물 구내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태는 행사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함. 행사 후 행사장 전체를 점검하여 청소가 잘 되었는지 원래 상태로 복구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추가 비용이나 청소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해야 함**

30. 식음료 서비스

(1) 체크리스트 항목

- A-2-1-1. 식음료공급업체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A-2-1-2. 식음료공급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대상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받았는가?
- B-3-3-2. 식음료공급업체와 안전관리 및 책임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 B-3-3-3 연회장의 서빙 인력은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배치했는지 확인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식음료 서비스는 안전한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질병 및 부상 예방을 포함해서 안전관리자의 우선 관심사로 식음료 서비스와 연관된 일반적인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오염 · 부적합한 주방시설 · 비위생적 환경 · 옆질러진 식음료 · 불안전한 화기 사용 · 부족한 음식량 · 메뉴선택 제약(채식주의자, 할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취급자 교육 결여 · 비위생적 복장 · 식음료 담당자의 배치 · 미숙하거나 부족한 직원 채용 ·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테이블과 의자 · 출장 음식 케이터링 · 주류 판매 및 음용 등
--	---

- **MICE 행사는 다양한 인종 및 국가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참가자의 식단 제약이나 종교적인 음식 규정을 고려해야 함**
-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만든 코셔(Kosher)
- 이슬람교 계율에 따라 도축하거나 가공된 할랄(Halal)
- 신체적 조건: 알레르기, 글루텐 과민증 등
- 철학적 신념: 채식주의자, 동물권리운동가, 환경운동가 등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유니크 메뉴나 옥외 시설을 연회나 만찬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모든 음식을 운반하기 때문에 음식을 데울 방법을 사전에 확인함
 - 뜨거운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에서 음식을 데우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거나 전기사용이 필요하나, 유니크 메뉴의 경우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유니크 메뉴의 현장 환경에 대해 직접 점검하여야 하며, 문화유산과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인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함
- 음식물 서비스의 준비와 제공은 반드시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음식물 서비스 규정은 위생허가, 식품위생법,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기타 대중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음식공급업체와 영업권보유업체는 필수적인 보건허가, 사업면허(신고), 보험담보에 대해 확인
 - 케이터링은 세척시설, 직원 위생장비, 해충 방제 등 모든 위생 상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함
- 보통 식중독은 식품매개 질병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일반적으로 설사, 메스꺼움, 구토, 경련성 복통 및 열 증상을 동반하며, 이는 부적절한 위생과 처리, 오염물질이 포함된 음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임

〈식품의 오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재료 · 농약 · 부패 · 독소 · 오염된 물 · 식품 접촉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보관용기 · 포장 물질 · 조리기구 · 음식 취급자 · 외부물질(머리카락, 돌, 먼지, 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설치류, 곤충 · 기생충 · 바이러스 · 박테리아 · 고장 및 손상 장비 · 세척 화학물질
---	---	---

- 음식제공업체(위탁급식영업, 도시락제조·가공업)는 가능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함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 여건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
- 케이터링업체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안전을 고려하며 식음료를 준비하고, 서비스 인력은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직원의 감염병을 식별하고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31. 관광 및 수송

(1) 체크리스트 항목

- B-4-1-1. 관광업체와 안전관리 및 책임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 B-4-1-2.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광코스 현지의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였는가?



- B-4-1-4. 관광업체 가이드는 관광 프로그램의 안전관리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였는가?
- B-4-1-5. 응급한 상황에서 참가자가 필요한 상비 약품류를 탑승차량에 비치하였는가?
- B-4-1-6. 프로그램 운영 중,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경찰, 소방, 의료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 B-4-2-1. 수송업체와 안전관리 및 책임 범위를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는가?
- B-4-2-2.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송 차량의 연식과 운전자 경력을 검토하였는가?
- B-4-2-3. 수송차량 이용 시, 탑승자에게 안전 및 주의사항을 고지 또는 안내하였는가?
- B-4-2-4.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인력에게 수송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B-4-2-5.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경찰, 소방, 의료)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관광 프로그램 운영 시 위기 형태

- 숙박, 음식, 교통 등 관광 접점별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상황
-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발생한 중대 사고로 인해 대응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

• 위기 유형

- 외부환경 관련
 - 안보치안 : 폭동, 강력범죄, 테러, 전쟁 등으로 인한 관광객 위기
 - 재해재난 : 대규모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의 자연재난 및 감염병, 다중 밀집 인파사고 등
- 관광산업 관련
 - 교통, 숙박, 음식, 안내, 쇼핑 등 관광 접점별 미흡한 수용태세 및 안전관리로 인해 다수의 관광객에게 인적/물적 피해 발생
 - 관광지별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사고

• 관광지 주변 환경 점검 사항

- 방문지 및 방문시설별 거리, 소요시간, 시설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확인
- 방문지별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및 인근 의료시설 확인
- 경유지 내 위험지역,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확인
- 기상예보를 고려한 행사 일정 및 행사 진행계획 수립
- 기상예보에 따른 참가자 구비 물품 사전 안내 (우산/우비, 방한물품 등)
- 폭설, 폭염, 폭우 등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대안 및 대응방안 마련

• 여행사 주요 거래처 안전관리 점검 대상

- 현지 여행사(랜드사)
- 교통기관 (항공사, 선박회사, 열차, 육상교통 등)
- 숙박업소 (호텔, 리조트, 펜션 등)
- 음식점 및 선택 관광지 등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수송 관련 점검 사항

- 운전자 특성(운전경력, 사고경력 등)
- 차량 상태 확인(정기점검표 확인, 노후화, 브레이크 상태 등)
: 차량 연식(최소 버스 7년 이하, 승합차 5년 이하)
- 수하물 적재, 보관상 애로사항 유무
- 적정인원 탑승 여부
- 차량 내부에 비상약품 비치 등

• 참가자 수송시 안전관리

- 도보 및 차량 이동
 - 외국인 참가자 대상 차선, 신호체계 등 교통안전 관련 기초 교육
 - 인솔자가 선두에 위치하여 위험요인 사전 파악
 - 이동 행렬이 길어질 경우 그룹을 나누어 이동하고, 그룹별 인솔자 배치
 -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 조회
 - 정기검사표, 점검기록부 및 차량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전세버스 임차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당일 배차된 차량의 차량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차량 전면 유리 등에 행사 참가자가 본인 탑승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 및 번호 부착
 - 소화기, 비상탈출 망치 등 안전장비 구비 여부 및 위치 확인
 - 운전자 대상 운행 일정 공유
 - 운전자 건강 상태 및 당일 컨디션 확인
 - 인솔자는 운전자 근처에 탑승하여 과속, 운전거리 미확보 등 안전운행 여부 확인
 - 매 승차 시 탑승 인원 이상 유무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확인
- 선박 이동시
 - 선박 내 구명조끼, 비상벨, 비상구 위치 확인
 - 참가자 대상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탈출 방법 교육

32. 관광 체험활동

(1) 체크리스트 항목

B-4-1-2.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광코스 현지의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였는가?

B-4-1-3. 만일 관광 프로그램이 잠재적인 고위험이 있다면,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특약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수상 활동

- 수상 활동 시 구급요원, 구명조끼 등 안전인력/장비 준비 현황
- 바다, 갯벌 방문 시 썰물/밀물 시간 확인
- 휴대전화 방수커버, 장화 등 개인 구비물품 사전 안내

• 산행 활동

- 산, 들판에서 독충 예방을 위한 팔토시, 자외선 차단제, 모자 등 구비 물품 안내
- 산행 안전 수칙에 관한 참가자 교육
- 행선지와 동선, 예상 하산 시간과 집결 장소의 사전 안내
- 구급약품, 라이터, 랜턴, 비상식량, 주머니칼 등 유사시 활용 가능한 장비 지침
- 참가자별 휴대폰 배터리 충전 및 보조 배터리 지침 안내
- 일몰 1~2시간 전 하산

• 체육 활동

- 참가자의 당일 건강 상태 및 기저질환 보유 여부 확인
- 경기장 노면 상태, 장애물 존재 여부 확인
- 경기 장비 및 시설 파손 여부 확인
- 경기 중간 적절한 휴식 시간 확보

• 실내 체험

- 재난 시의 비상구 등 대피로 확인
- 소방설비, 완강기, 제세동기 등 안전장비 구비 여부 및 위치 확인
- 이용시설 내 참가자 이동 동선 사전점검
- 체험 유형별 참가자 기저질환 등 건강상 위험요인 확인
- 일정 강도의 신체활동을 포함한 체험활동의 경우 사전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휴식 시간 확보

• 참가자 관리

- 체험활동 중 유해 장소나 위험시설 등에 접근 통제
- 스포츠 등 일정 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포함한 체험활동 시작 전 준비운동 실시

33. 숙박 관리

(1) 체크리스트 항목

B-4-3-1. 비상시 숙박시설의 대피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참가자에게 고지 또는 안내하였는가?

B-4-3-2. 숙박 참가자 간의 안전을 위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객실 배정이 가능하도록 숙박시설에 요청하였는가?

B-4-3-3. 참가자 숙박시설의 담당 인력에게 숙박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B-4-3-4.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숙박시설 담당자 및 관련 기관(경찰, 소방, 의료)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참가자의 호텔 객실은 국가별, 개인별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다양한 호텔(호텔 등급별)의 객실 예약과 외교적, 종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호텔을 분리 배정해야 함
 - 잠재적으로 사고 발생이 가능한 미수교국, 비우호적인 국가관계의 참가자
 - 종교 문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참가자
 - 국가별로 호텔을 배정하거나 층수를 다르게 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숙박시설의 안전시설 확인사항
 - 방화설비 : 화재와 연관된 소화시설 및 비상탈출 시설 등 확인
 - 방풍설비 : 태풍 등 강한 바람에 따른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
 - 방수설비 : 노후, 누수 등에 의한 벽의 갈라짐이나 붕괴 등의 위험요소 확인
 - 출입문 상태, 시건 장치, 금고 운영 등의 점검
 - 수상 스포츠 및 수영장이 있는 숙박시설은 안전요원의 배정
 - 로비, 계단, 욕실, 수영장 등 바닥 미끄러움에 주의가 필요한지 확인
- 객실 안전관리 점검 사항
 -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방재설비 구비 여부 확인
 - 객실별 잠금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숙소 내 방송시설 구비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객실 내 적절한 환기 및 정화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 참가자 투숙 객실 리스트 확보
- 감염병 예방
 - 객실 및 공용공간 소독 이력 등 방역 관리 이력 확인
 - 객실의 주기적 환기 및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C. 법률부문

34. 산업안전보건법(1)

(1) 체크리스트 항목

A-5-1-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는가?

A-5-1-2.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는가?

A-5-1-3.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제3조)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도 전제하므로, MICE 주최자는 사업주가 될 수 있음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교육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함(시행령 제14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함(제17조).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보좌와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함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고(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제32조)
- 벌칙 또는 과태료 : A-5-1-1(과태료. 제175조 제5항 제1호), A-5-1-2(과태료. 제175조 제5항 제1호), A-5-1-3(과태료. 제175조 제5항 제1호)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9조, 제32조.

34. 산업안전보건법(2)

(1) 체크리스트 항목

A-5-1-4.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가?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A-5-1-5.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에 관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였는가?
- A-5-1-6.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 A-5-1-7.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 A-5-1-8.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 A-5-1-9.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MICE 사업 내용에 맞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할 의무가 있음(제34조)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함(제37조)
-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38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38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1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제52조)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54조)



- 벌칙 또는 과태료 : A-5-1-4(과태료, 제175조 제5항 제3호), A-5-1-5(과태료, 제175조 제5항 제1호), A-5-1-6(벌칙,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4조), A-5-1-7(벌칙,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항, 제174조), A-5-1-8(벌칙, 제168조 제1호), A-5-1-9(벌칙, 제168조 제1호)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51조, 제54조.
- 고용노동부(2023).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례_2023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전동차 충격 사고]

1) 개요

2023년 3월 9일, 2023○○○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전동차에 진행요원이 끼어 머리와 치아 손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

2) 상황

3월 9일 오후 9시 10분경, 박람회장 내에서 관람차 승차를 돕는 진행요원 A씨가 전동차를 앞으로 이동하라고 손짓을 했고, 관람차 기사가 수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급발진하여 A씨가 전동차에 치였음

3) 결과

A씨가 차량 밑으로 깔려 머리 부상과 치아 손상이 발생

4) 시사점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이는 등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34. 산업안전보건법(3)

(1) 체크리스트 항목

- A-5-1-10.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는가?
- A-5-1-1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가?(단,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2) 내용 설명

- 사업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바(제15조),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제62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함(제63조)
- 벌칙 또는 과태료 : A-5-1-10(과태료. 제175조 제5항 제1호), A-5-1-11(벌칙. 제167조 제1항, 제169조 제1호, 제174조)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35. 중대재해처벌법(1)

(1) 체크리스트 항목

- A-5-2-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는가?
- A-5-2-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바(제2조 제8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3자에게 업무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도 전제하므로, MICE 주최자는 사업주가 될 수 있음
-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제2조 제9호)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의무와 책임이 있음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이 있음(시행령 제4조 제1호).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있음(시행령 제4조 제3호).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시행하지 않아도 됨
- 벌칙 : A-5-2-1(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A-5-2-2(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참고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3호.
- 고용노동부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35. 중대재해처벌법(2)

(1) 체크리스트 항목

- A-5-2-3.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는가?
- A-5-2-4.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법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는 등 조치를 하였는가?
- A-5-2-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는가?
- A-5-2-6.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이 있으며, 각목의 내용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있음(시행령 제4조 제4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지출을 위해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한 것임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법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는 등 조치를 하였는가’가 있음.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과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임(시행령 제4조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책임관리자 등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이 있음.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MICE 산업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만 두면 되는 것으로 파악됨.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있음(시행령 제4조 제7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한 것임
- 벌칙 : A-5-2-3(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A-5-2-4(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A-5-2-5(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A-5-2-6(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참고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4호, 시행령 제4조 제5호, 시행령 제4조 제6호, 시행령 제4조 제7호.

35. 중대재해처벌법(3)

(1) 체크리스트 항목

A-5-2-7.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는가?

A-5-2-8.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였는가?

A-5-2-9.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였는가?(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2) 내용 설명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이 있으며, 각 목으로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음(시행령 제4조 제8호). 이로써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이 있음. 각 목으로는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있음. 수급인 자체의 능력과 노력없이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수급인 선정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제3자의 종사자(근로자 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해야 함(제5조). 따라서 앞에서 본 A-5-2-1 내지 A-5-2-9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함
- 벌칙 : A-5-2-7(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A-5-2-8(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A-5-2-9(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A-5-2-10(처벌.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예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 관리체계		40	
1-1. 리더십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1-2. 근로자 참여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1-3.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1-4. 비상조치 계획	비상조치 계획의 적정성	10	
2.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 관리계획		60	
2-1.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도급·용역·위탁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2-2. 자원 배정 (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2-3.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2-4.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 조치계획	15	
합 계		100	



[참고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8호, 시행령 제4조 제9호,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사례_○○의 브랜드 콘서트 ‘흠뻑쇼’ 외주 스태프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고]

1) 개요

2022년 7월 31일, ○○ ‘흠뻑쇼’ 콘서트장에 설치된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2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2) 상황

7월 31일 오후 3시 50분경,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전날 개최된 ○○ ‘흠뻑쇼’ 콘서트장에 설치된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2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음.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음. 사망자는 몽골 국적의 20대 남자로 무대 구조물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었음

3) 결과

경찰은 일단 A씨 사망 사고를 변사 처리했으나,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

4)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근로자 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책임을 지게 됨에 유의해야 함

3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 체크리스트 항목

- A-1-3-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인/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A-1-4-1. 행사장에서 잠재적인 화재 발생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A-3-2-1. 해당 MICE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검토하고,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행사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가?
- A-4-2-1. MICE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행사장의 내·외부, 주변 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가?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2) 내용 설명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을 포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제19조 제1항)
 - MICE 행사 주최자에 한정된 의무는 아님
-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의 건축물 등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제34조의6 제1항, 제2항)
 - MICE 행사 주최자는 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음
-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축제의 개요,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제66조의11 제3항)
-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등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제76조의5 제1항)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 MICE 행사 주최자는 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4조의6 제1항, 제66조의11 제3항, 제76조의5 제1항.

[사례_이태원 헬러윈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법 개정안]

1) 개요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톤호텔 인근 좁은 골목 등에 헬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 발생

2) 상황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톤호텔 서편 좁은 골목 등에 헬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 사고 발생. 당시 재난안전법상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



3) 결과

159명이 사망

4) 시사점

이후 정치권이 제도개선안을 담은 재난관리법 개정안을 다소 발의하였고, 그 결과 재난관리법이 계속 보완, 개정되고 있고, 그 중에는 지자체장의 책임 강화와 지역축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7. 민법(공작물 책임)

(1) 체크리스트 항목

A-1-4-4. 행사장 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모든 자재는 방염 재료(선방염 또는 후방염 처리)를 사용하였는가?

B-2-2-5. 부스·무대 및 구조물은 안전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였는가? 만일 안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는가?

(2) 내용 설명

-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758조 제1항)
-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소유는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를 의미함
-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데, MICE 행사를 위해 설치한 무대, 구조물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MICE 주최자는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공작물의 관련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때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함

[참고사항]

- 민법 제758조 제1항.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사례_2020년 부평구 ○○기지 '캠프○○' 전광판 사고]

1) 개요

2020년 10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기지 '캠프○○'에서 행사용으로 설치한 LED전광판이 쓰러지면서 시민 6명이 전광판에 맞아 다친 사고

2) 상황

80여 년 동안 접근이 통제됐던 인천 부평○○기지 '캠프○○' 일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행사가 열리던 구역에서 행사용 LED 전광판이 쓰러져 전광판 앞에 있던 의자에 앉아 행사 영상을 관람하던 A(89)씨 등 6명이 다침. 당시 전광판은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한 지탱 장치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음

3) 결과

- 1명 사망. 5명 경상
- ○○시 팀장급 공무원 A씨와 ○○도시공사 팀장급 간부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선고
- 행사기획 업체 대표와 영상장비 설치업체는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 시사점

행사 중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고 안전성을 갖도록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

3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체크리스트 항목

A-1-4-2. 행사장 내 화재감지시스템(경보감지기 등)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A-1-4-3. 행사장 내 '화재진압시스템(소화전, 소화기 등)'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 즉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
- 특정 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이 규정되어 있음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2. 2. 근린생활시설. 마목)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데(제12조 제1항), 여기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을 말함(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MICE 주최자도 공연장의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의 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음

[참고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례_부산 ○○해수욕장 달집태우기 행사장 폭발사고]

1) 개요

2019년 2월 19일, 부산 ○○해수욕장 달집태우기 행사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행사 관계자와 관람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

2) 상황

19일 오후 5시41분경 부산 ○○해수욕장 달집태우기 행사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행사 관계자와 관람객이 부상을 당함. 행사 관계자들은 이날 달집에 불을 붙이기 전 휘발유 1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음.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높이 30m, 지름 20m 크기의 목재에 점화를 시도하는 순간 미리 부려놓은 휘발유에서 나온 유증기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

3) 결과

이 사고로 행사 관계자 2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관람객 1명이 폭발음에 놀라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음

4) 시사점

불과 폭발성 물질이 사용되는 행사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39. 공연법

(1) 체크리스트 항목

- A-1-2-3.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법에 따라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의 조건을 충족하였는가?
- A-4-2-4. 행사장 및 시설 내에 '비상 대피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거나 참가자에게 안내하였는가?
- B-3-1-5. 만일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참가자/관람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동선을 확보하고 점검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이 부분은 '공연장 운영자', 즉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
- '공연법에서는 공연장 운영자에게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해야 하며, 또한 해당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내용을 ‘공연장 외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준용함(공연법 제11조 제4항, 제1항)

-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외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관람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안전관리비
-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공연비용의 1.21% 이상
 - 안전관리조직
-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안전총괄책임자(1명), 안전관리담당자(1명 이상)
- 3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안전총괄책임자(1명), 안전관리담당자(2명 이상)
 - 안전교육
- 안전총괄책임자: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의무교육
- 안전관리담당자: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의무교육
- 공연장 운영자는 그 외에도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난 안내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공연법 제11조의3, 4, 5)
- MICE 주최자도 경우에 따라서 공연장 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음

[참고사항]

- 공연법 제11조 제4항, 제11조의3, 4, 5.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www.kossis.or.kr

[사례_2014년 ○○ 환풍구 사고]

1) 개요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신도시에서 개최된 제1회 ○○테크노밸리 축제 도중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추락사고가 발생

2) 상황

2014년 10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성남시의 ○○신도시 ○○○○○광장에서 걸그룹 포미닛이 공연을 진행하던 중, 인근 건물에서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27명의 관람객이 해당 건물의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환풍구가 붕괴되며 전원이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함



3) 결과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4) 시사점

2014년 붕괴 사고 당시 기존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 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했음. 해당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한 공연 관람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향후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은 사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해야 하는 것 등으로 법 개정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체크리스트 항목

A-1-3-4. 만일 행사장 주변의 교통 및 군중통제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지자체/경찰서 등)과 협의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B-3-1-6. 1,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MICE 행사의 경우, 참가자/관람객의 통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집시법 제15조). 보통의 MICE 행사에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면 집시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543 판결) 집회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서는 MICE 행사에도 집시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는데,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목적, 일시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해야함(제6조 제1항)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상 옥외집회를 할 수 없지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음(제10조)
-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제16조 제1항),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함(제16조 제3항)

[참고사항]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3항.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사례_ '○○음악회' 행사 집시법 적용]

1) 개요

2001년 6월 오전 7시부터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 ○○○○' 주최로 미군 환경파괴행위 규탄 집회를 개최함.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저녁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 세상을 여는 열린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개최함

2) 상황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A는 2001년 6월 오전 7시부터 서울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미군 환경파괴행위 규탄 집회에 참가하고 오후 7시까지 시위를 진행함. 집회가 끝난 뒤 A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저녁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세상을 여는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열었고, 한 사람씩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뒤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3)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음악회라는 명칭 하에 진행됐었고 노래자랑 행사로서의 성격이 포함돼 있더라도 제반 정황에 비춰보면 집회는 음악회라는 형식을 빌어 미군의 환경파괴행위를 규탄하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회였다"고 판단하고 일몰 후 옥외집회 관련 규정을 위반, 벌금형을 선고함

4) 시사점

문화제의 형식을 가진 행사라고 해도 실질적 내용이 집회라면 집시법이 적용, 일몰 후에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면 관련 절차를 지켜야 함.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등의 형식을 가진 행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집회의 내용이라면 집시법이 적용될 수 있음

41. 개인정보보호법

(1) 체크리스트 항목

- B-1-2-1. 참가자의 수집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였는가?
- B-1-2-2. 참가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는가?
- B-1-2-3. 행사진행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와 기획사는 해당 내용을 상호 협의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가?
- B-1-2-4.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화장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 및 운영하지 않았는가?
- B-1-2-5.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제15조 제1항, 제1호~제7호)
 -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등 제15조 제2항 1호~4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제15조 제2항). 이때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제16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7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제7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제18조 제1항)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제25조 제1항).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제25조 제4항),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함(제25조 제7항)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교도소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강화된 보호를 하고 있어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4조의2 제1항).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제24조의2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29조)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고(제34조 제1항).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제34조 제2항)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참고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5-9-1),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제29조,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사례_ 대형병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1) 개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 직원 또는 제약회사 직원이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 정보를 외부로 반출한 사고가 발생

2) 상황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병원 직원 혹은 제약회사 직원이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 정보를 상급 및 일반종합병원 17곳에서 외부로 반출한 사건이 발생했음. 수만 명 이상의 환자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제약사 등으로 유출됐음. 병원들은 적절한 보안 대책이 없거나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남

3) 결과

2021년 7월 ○○○병원에서 발생한 개인 민감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탈취 시도가 의심되기도 하였음

4) 시사점

대형 MICE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42.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1) 체크리스트 항목

B-1-1-3. 유명인/참가자의 초상, 성명,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는가? 또는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적절히 변경하였는가?

B-1-1-4. 참가자의 얼굴(초상사용권)이 행사기록을 위한 사진·영상 촬영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참가자에게 사전에 고지 또는 안내하였는가?

(2) 내용 설명

-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함
-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함
- 사람의 초상은 '초상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도 초상권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

- 유명인의 경우(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일종의 퍼블리시티권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하고 있음
- 일반인이건, 유명인이건 그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서명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참고사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사례_2014년 ○○치맥페스티벌 보도사진의 초상권 피해]

1) 개요

언론사에서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행사 참여 시민들 사진을 촬영, 게재하였다가 이 사진으로 인해 오인을 받았다는 대상자들의 항의로 손해배상을 하고 사진을 삭제함

2) 상황

언론사 '○○○대구경북'은 2014년 7월 17일자 "○○치맥페스티벌 "장마전선에도 이상 無"라는 제하의 기사 사진에서 행사장 내 한 치킨업체가 주최한 시식행사장에서 치킨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현장 스케치 사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하였음. 촬영된 남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동의없이 몰래 촬영된 사진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사귀는 사이로 오해를 받고,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함

3) 결과

중재 결과 촬영대상자들은 8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고, 사진은 삭제되었음

4) 시사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명인이건 일반인이건 동의 없는 초상, 사진 등의 게재는 불법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동의를 얻거나 원래 사람을 알 수 없도록 변경해서 사용해야 할 것임

43. 저작권법

(1) 체크리스트 항목

B-3-2-1. MICE 행사에 사용하는 홍보/제작물은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서 작성되었는가?

B-3-2-2. 홍보/제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사용된다면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였는가?

B-3-2-3. 사용하는 저작물에 저작자(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였는가?

B-3-2-4. 사용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는가?

III. MICE 안전관리 매뉴얼

(2) 내용 설명

-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 또는 직원이 창작한 것은 자신의 저작물에 해당하니 저작권 행사에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함
- 행사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전시(미술저작물 등의 경우) 또는 공연(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를 확보하려면 이용 허락(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법이나 저작권을 넘겨받는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음
- 저작권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저작권법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
-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제작자'(영화사, 드라마제작사 등)가 전체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제작자에게 문의 및 확인 필요
- 음악저작물의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 음악저작물은 '3중 권리구조'로 권리자가 3그룹(작사작곡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이 존재하고, 이들 모두의 허락을 얻어야 함
- 음악은 권리가 '신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권리자가 아닌 신탁관리단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신탁단체에서는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저작물(곡)의 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항상 창작자(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해야 함(성명표시권)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내용, 형식, 제호를 변경하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함

[참고사항]

- 저작권법 제45, 46조, 제105조, 제12조, 제13조.



IV

안전사고 사례

IV. 안전사고 사례

1. 2000년 ○○자동차모터쇼 전시품 화상 사고

1) 개요

2000년 5월 5일, ○○자동차모터쇼가 개최되고 있는 코엑스의 한 자동차업체 부스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전시된 모터사이클에 어린이가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2) 상황

○○자동차모터쇼가 개최되고 있는 코엑스의 모터사이클을 전시한 부스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관람하는 중 어린이가 손에 화상을 입음. 모터사이클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여서 배기관의 외부는 뜨거운 열로 달아올랐고 키가 작은 어린이가 모터사이클에 접근하면서 배기관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3) 결과

- 어린이의 손에 화상
- 모든 차량류의 시동 불가 처리

4) 시사점

- 전시품의 작동이나 시연이 관람객에게 위험을 유발하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관람객의 행동과 관점에서 전시품을 작동하고 시연하는 안전점검 실시

2. 2000년 ○○자동차모터쇼 시위대 난입

1) 개요

2000년 5월 10일, ○○자동차모터쇼가 개최되고 있는 코엑스 태평양홀에 ○○자동차의 GM 매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난입을 시도하여 모터쇼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고 발생

2) 상황

1999년 ○○그룹의 부도 위기로 인하여 ○○자동차의 해외매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노조는 2000년 3월부터 노조가 파업을 개시했고, □□차 등 경쟁업체 노조에 파급되어 4월부터 공동파업이 전개됨. 총선 시기와 맞물리면서 해외매각 반대 여론의 확산과 GM의 인수설에 따라 노조의 시위가 확산했으며, GM이 참가하고 있던 ○○자동차모터쇼(5/4~5/10)의 마지막 날 12시경 GM 매각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마친 시위대가 모터쇼 행사장으로 난입을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

3) 결과

- 시위대의 난입으로 행사장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 및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



- 일시적으로 모터쇼 운영 중단

4) 시사점

- 행사장에 시위대의 난입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대비가 필요
- 사회재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사전 평가하는 것이 필요

3. 2001년 ○○세계섬문화축제 우천/전기합선으로 공연 취소

1) 개요

2001년 5월 19일, 개막 첫날 ○○세계섬문화축제 개막식만 하고 오후 시간대 축제 참가 섬의 지역관 공연이 전혀 없어 입장객의 환불을 요구 사태와 호우주의보 예보특보만으로 휴장하거나 공연 중 폭발음과 불꽃으로 인해 관람객 대피하는 등 관람객의 축제에 대한 불만 발생

2) 상황

- 전 세계 26개국 34개 섬이 참가하여 한달 동안 민속공연과 쇼가 펼쳐지는 축제이나, 개막식 첫날 오후 시간대 참가 섬의 공연이 전혀 없자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항의 소동이 벌어짐
- 5월 21일, 호우주의보 가능성에 대한 기상청 예보특보만으로 축제장을 휴장하였으나 실제 강우량은 36mm로 소량이었고 호우주의보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를 모르고 방문한 관광객의 거센 반발이 발생
- 5월 22일, 중국 가무단의 공연 중에 아시아관 출입구에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발음과 불꽃이 30여 초간 반복돼 공연이 중단되고 관람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짐

3) 결과

- 주최 측의 어리숙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람객 대응 미숙으로 축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 발생
- 관람객의 불만 발생으로 대부분 여행사는 관광코스에서 섬문화축제장을 제외함

4) 시사점

- 항상 관람객의 관점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함
-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매일 현장 투어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을 체크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4. 2008년 ○○전통차사발축제 애드벌룬 화상 사고

1) 개요

2008년 5월 5일, ○○전통차사발축제가 열리고 있는 도자기전시관 근처에 설치된 홍보용 애드벌룬이 폭발하여 자원봉사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

IV. 안전사고 사례

2) 상황

5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축제장 인근 하천 상공에 띄워놨던 지름 2m의 애드벌룬이 가스가 빠지면서 때마침 불어온 강한 바람으로 인해 땅바닥으로 내려온 것을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축제관계자와 자원봉사자 4명이 철거작업을 실시함. 바람을 빼던 도중 갑자기 애드벌룬이 폭발하면서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옥외광고물설치법에 따르면 헬륨가스를 사용해야 하나 폭발성이 높은 수소가스를 사용하였음

3) 결과

- 부상자 2명(2도 화상)

4) 시사점

- 애드벌룬에 주입하는 헬륨가스 여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함(시공업체 구입 증빙서류 제출 등)
- 옥외광고물설치법의 규정 준수 확인이 필요

5. 2008년 ○○국제음악영화제 천막 붕괴사고

1) 개요

2008년 8월 18일, 제14회 ○○국제음악영화제가 개최하고 있는 청풍랜드 주차장에 먹거리 장터를 위해 입점한 5곳의 음식점 천막이 돌풍에 모두 붕괴되는 사고 발생

2) 상황

8월 18일 오전 9시경,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청풍호 청풍랜드 주차장에 한방음식점 5곳이 천막을 치고 입점하였으나,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천막이 붕괴되어 내부에 있던 냉장고, 집기, 식재료 상자 등이 부서져 아수라장이 되었음. 먹거리장터 운영 위탁업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주최측은 민간위탁으로 보험가입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토함

3) 결과

- 천막 5개동, 집기류, 식자재 등 손실
- 식당 운영 불가

4) 시사점

- 우발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없었으며, 돌풍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 사고로 발생
- 민간위탁은 물론 모든 하도급업체에 대해 필요한 보험가입 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확인



6. 2009년 ○○○역새태우기축제 화재사고

1) 개요

2009년 2월 9일 대보름맞이 ○○○역새 태우기를 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돌풍과 오랜 가뭄으로 바싹 마른 역새로 인해 거세진 화재로 인명사고 발생

2) 상황

행사장에는 3만 명 내외의 관람객이 모였으나 안전요원은 257명에 불과했으며, 역새밭 18만 5,000㎡를 태우면서 군청이 준비한 소화 장비는 150여 개의 등짐 물 펌프이며, 안전을 위한 방화선 너비는 평균 15~40m로 운영함

3) 결과

7명 사망, 81명 부상, 1995년 시작된 본 축제를 6회 만에 폐지함

4) 시사점

- 축구장 24배 크기에 달하는 역새밭에 불을 붙여 태워버리는 만큼 안전관리가 미흡하면 매우 위험한 행사임
- 산림청 국유림관리소는 너비 50m의 방화선 2Km 구축, 안전요원 320명 배치, 산불진화 헬기 대기, 뒷불 감시조 운영, 확산 예방을 위한 사전 물뿌리기 등 산불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이행 조건으로 행사를 허가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7. 2010년 ○○월드레저경기대회 태풍 대응

1) 개요

2010년 9월 1일, 태풍 곤파스의 북상으로 ○○월드레저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비상대책 매뉴얼에 따라 해당일 경기를 잠정 취소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였음. 9월 2일 태풍이 지나간 후 시설물과 장비를 설치하고 경기대회를 무난히 진행함

2) 상황

○○월드레저경기대회는 2010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태풍 곤파스의 북상으로 인해 비상상황이 벌어짐. 조직위에서는 비상대책 매뉴얼에 따라 태풍에 취약하고 단시간에 해체할 수 있는 마퀴텐트, 현수막, 장비, 임시 시설 등을 최대한 철수하였음. 다음날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지나가면서 ○○시에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였고, 경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행사장은 산업전시관(TFS텐트)의 입구 상단이 약간 찢겨 나갔지만 다른 피해는 없었음. 하루 만에 태풍이 지나가고 철수했던 시설물과 장비는 경기대회를 위하여 곧바로 설치되고 경기대회는 속개되었으며, 잠정 취소되었던 경기종목은 기존

IV. 안전사고 사례

경기종목의 일정을 조정하여 폐막일까지 순조롭게 진행함

3) 결과

- 대형텐트의 입구 상단 일부 파손

4) 시사점

- 사전 비상사태에 따른 매뉴얼을 수립하고 실제 상황 시 이를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함
- 비상사태 대응책은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함

8. 2013년 무료교환권 배포 부상 사고

1) 개요

2013년 8월 9일, 한강공원에서 스마트폰 무료교환권이 담긴 풍선을 하늘로 날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몇 명이 땅바닥에 보관된 풍선을 강탈하자 군중심리가 작용해 나머지 사람들도 풍선을 잡으려고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사고 발생

2) 상황

8월 9일 오전 11시경,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하늘에 뜬 풍선(스마트폰 무료교환권 100장)이 터져 교환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주운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는 행사인 '○○ 이벤트'를 열 예정이었음. 이에 400여 명이 몰려면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고, 강풍의 이유로 행사가 지연되자 일부 참가자가 아직 날아오르지 않은 풍선으로 돌진해 풍선을 강탈하였음. 이에 군중심리가 작용해 나머지 사람들도 날아오르지 않은 풍선을 잡으려고 달려들며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부상 사고가 발생함

3) 결과

- 참가자 20여 명 부상

4) 시사점

- 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참가자 안전에 대한 적합성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함
- 참가자들의 군중심리에 대한 이해와 군중통제 대책 수립을 고려해야 함



9. 2013년 ○○자전거축제 압사 사고

1) 개요

2005년 10월 3일, 경북 ○○시민운동장에서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 가요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던 관객이 떠밀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

2) 상황

오후 5시 40분경, ○○시민운동장 직3문 출입구에서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약 5천 명 정도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문을 여는 순간 앞쪽에 있던 할머니 한 명이 떠밀려 넘어졌고 이어서 뒤에 있던 사람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함. 사고가 발생한 직3문은 원래 입구가 아닌 출구로 사용하던 문으로 운동장 안쪽으로 45도의 급경사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입장하는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곳임. 경호용역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에 문제가 있어 안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경호업체도 세금 문제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로 확인됨

3) 결과

- 사상자 80여 명 발생(사망 11명, 부상 70여 명)

4) 시사점

- 야외 공연은 일시에 많은 관람객이 입장하므로 줄서기와 가이드 봉을 이용한 대기 동선을 마련해야 함
- 입장객 관점에서 적절한 입구 환경인지를 검토하고 안전한 입장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총 입장객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무자격업체와의 계약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

10. 2013년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저작권 침해 소송

1) 개요

2013년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한 전시부스 디자인 시안을 공모한 뒤, 탈락한 업체의 시안을 무단으로 복제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음

2) 상황

화장품 제조업체 P사는 박람회 참가 전인 2013년 3월 전시부스 디자인 및 설치업체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낸 뒤, 선정된 S업체에게 탈락한 Q업체의 디자인 시안대로 제작을 요구함. 이에 S업체는 Q업체의 전시부스 디자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전시부스를 제작하여 이에 Q업체는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함

IV. 안전사고 사례

3) 결과

- 화장품 제조업체 P사는 300만원, S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
-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800만원 판결

4) 시사점

- 저작권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타사의 시안 사용은 사전에 정당한 대가 제공과 합의가 필요

11. 2014년 ○○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사고

1) 개요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개최된 제1회 ○○테크노밸리 축제 중 인근 주차장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2) 상황

10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신도시의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테크노밸리 축제가 개최됐으며, 무대에서 걸그룹 포미닛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음.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27명의 관람객이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위에 올라가 관람을 하던 중,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지하 18.7m로 전원이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함. 게다가 주최측 행사 담당자가 사고에 대한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한 사고

3) 결과

- 사상자 27명(사망 16명, 부상 11명)
- 환풍구 시설 붕괴

4) 시사점

- 행사장 주변에 현장투어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
- 관람객의 안전불감증

12.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피해자 보상문제

1) 개요

2014년 2월 17일 오후 9시 11분 무렵, ○○시에 있는 ○○○오션리조트의 강당 건물이 폭설로 무너져내려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이던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10명, 부상자 204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로 천재지변, 부실공사, 오리엔테이션을 강행한 총학생회의 잘못으로 수많은 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고



2) 상황

- 시설 소유주인 ○○○오션리조트는 사고 1건당 최대 6억원 보상을 받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으나 5억원은 재물에 대한 보상액이며, 인명 피해에 보상을 해주는 배상책임담보는 1억원에 불과함. 붕괴사고로 학생 10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친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학생 1명당 보험금은 100만원 미만임
- ○○외국어대학교는 학교 공식행사 참여 시 사망은 1인당 최대 1억원, 부상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피해자 보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

3) 결과

- 추후 시설 소유주인 코오롱그룹에서 유가족과 합의

4) 시사점

- ○○○오션리조트와 유사한 다중이용시설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총 보상금액 10억원 이상, 배상책임담보는 3억원 이상으로 ○○○오션리조트의 보험가입액은 평균의 1/3수준으로 너무 적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사고 시 보상에 대한 자체 부담이 높음
- MICE 행사와 관련한 보험 가입 시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

13. 2015년 ○○세계불꽃축제 장비 설치와 익사 사고

1) 개요

2015년 10월 2일, ○○세계불꽃축제에 사용될 조명 장비를 옮기기 위해 조명업체 직원이 모터보트에서 바지선으로 이동하다 물에 빠져 익사 사고 발생

2) 상황

10월 2일 오후 10시 40분경, 조명업체 직원은 ○○불꽃축제에 사용될 레이저 조명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모터보트를 타고 원효대교 인근의 바지선으로 이동하다가 모터보트와 바지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족하여 한강 물에 빠졌음. 사고 당시 직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한강은 평소보다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음

3) 결과

- 조명업체 직원 1명 익사

4) 시사점

-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는 한강에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 흐르는 물과 배라는 특수한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작업장처럼 안일한 판단에 경각심

14. 2015년 ○○국제안경전시회 부스 천장 붕괴 사고

1) 개요

2015년 4월 22일, ○○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안경전시회에 참여한 한 업체의 부스 천장이 무너져 내려 부상자 발생

2) 상황

4월 22일 오후 1시 5분경, ○○국제안경전시회에 참여한 안경유통업체 S사가 자체 시공한 부스의 천장 135㎡ 가운데 50㎡가 무너져 내렸음. 그 원인은 부스 상부를 가로지르는 금속 프레임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무너졌으며, 참가업체가 부스에 문제가 있어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발생함

3) 결과

- 업체 관계자 1명 부상

4) 시사점

- 부실 공사의 결과로 부스 설치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안전관리에 필수

15. 2015년 ○○세계물포럼 개막식 구조물 붕괴사고

1) 개요

2015년 4월 12일, ○○ 엑스코에서 열린 세계물포럼 개막식에서 퍼포먼스로 열린 '자격루 출당기기'에서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2) 상황

4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세계물포럼의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15명의 각국 주요 참석자들이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자격루(물시계) 출당기기' 퍼포먼스를 하던 중 나무로 만든 높이 2m(받침대 포함)짜리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원래 계획은 줄을 당기면 구조물 상단에 있는 항아리에 담긴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과정을 거쳐 개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져야 함

3) 결과

-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대통령이 참석한 국제행사로서 국가 이미지 실추

4) 시사점

- 개막식의 퍼포먼스로 제작되는 구조물은 단순한 구조나 작동 방식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함



16. 2015년 ○○○(전시컨벤션센터) 폭탄 테러 위협

1) 개요

2015년 10월 25일, ○○○ 테러 위협으로 경찰이 동원되어 밤늦게까지 수색을 벌였으나 특별한 우려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2) 상황

10월 22일, 아프리카의 한 해외 공관에 수니파 무장조직 IS의 연계 조직이 폭탄 테러를 ○○○에 시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고, 이에 경찰 2개 중대를 동원해 당일 오전 9시부터 16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음. 테러 예정일인 10월 25일이 지나가는 10월 26일 0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수색 인원을 철수시켰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관할 지구대의 순찰을 강화함

3) 결과

예고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에게 많은 불안감 조성

4) 시사점

- 2015년경 IS 등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가 전 세계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시기임
- 조그만 첩보라 할지라도 테러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17. 2016년 프랑스 ○○축제 테러사건

1) 개요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에서 자유-평등-박애의 대혁명을 기념하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 축제를 즐기던 시민들에게 테러리스트가 차량으로 돌진하여 수십 명의 인명사고 발생

2) 상황

테러리스트는 밤 10시 30분, 시민들이 한참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인파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해안 산책로로 19톤 대형 트럭을 몰고 들어왔음. 프랑스는 잇단 테러로 경계 태세가 강화된 상태라 차량을 검문하고 있었지만, 테러리스트는 아이스크림 배달 중이라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우기며 진입하였고, 이후 인파를 밀어붙이며 2km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며 인사 사고를 일으킴

3) 결과

86명 사망, 188명 환자 병원 이송, 50명 중상

4) 시사점

- 프랑스 내 잇따른 테러로 경계 태세가 강화된 상태였으나, 축제장 출입구의 안전요원은 차량 출입을 원칙대로 통제하지 못했음

IV. 안전사고 사례

- IS(이슬람 테러단체)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으며, 프랑스 경찰은 IS를 비롯한 테러 조직과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국제적인 테러는 축제나 MICE 행사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반인을 타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18. 2016년 ○○○(전시컨벤션센터) 대규모 정전 사고

1) 개요

2016년 12월 2일, ○○○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건물 안에 있던 2만여 명이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으며,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엘리베이터가 멈춰 승객 10여 명이 갇히고 건물 내 상가 2백여 곳이 영업에 피해 발생

2) 상황

이날 오후 1시 52분, ○○○ 전시컨벤션센터와 트레이드타워, 아셈타워에서 갑자기 정전이 발생함. 정전 당시 해당 건물 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급히 대피하는 큰 혼란을 겪었으며, 사이렌이 울렸으나 안내방송이 8분 정도 이후에 공표되어 공포와 불안감이 조성됨. 정전으로 건물 승강기에 시민 10여 명이 갇혀 있었으나 5~10분 내 모두 구조됐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음. 이날 열린 창조경제박람회와 소프트웨어(SW)주간 행사가 모든 조명이 꺼져 암흑 상태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곧 복구돼 20분 만에 박람회를 재개함

3) 결과

- 정전으로 2만여 명의 시민이 긴급대피하는 상황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인명사고는 없음
- ○○○ 내 행사가 20여 분 중단되고 건물 내 상가 2백여 곳의 카드 결제 불가로 영업 차질

4) 시사점

- 가장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은 전시컨벤션센터도 정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 제고
- 비상 상황 발생 시 관람객이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안내방송과 대피 유도가 필요함

19. 2022년 ○○한우축제 불꽃놀이 화재 사고

1) 개요

2022년 9월 30일, ○○한우축제 개막 축하 불꽃놀이의 불발탄이 인근 비닐하우스 창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사고



2) 상황

9월 30일, 오후 9시 21분경, ○○한우축제의 개막식에 이어 개막 축하를 하는 불꽃놀이가 끝난 직후, 폭죽 불씨가 인근 정미소 비닐하우스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비닐하우스와 화물차가 전소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

3) 결과

- 4명 경상
- 쌀 14톤, 비닐하우스 2동, 1톤 화물차 4대 전소

4) 시사점

- 불꽃놀이는 화재 원인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사전 안전거리 유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함
- 바람이 부는 경우 멀리까지 불씨가 날아갈 수 있으며, 불꽃 낙진으로 인한 눈 손상 등을 유의해야 함

20. 2023년 ○○○ 콘서트 무대 구조물 붕괴 사고

1) 개요

2023년 9월 20일,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설치 중이던 ○○○ 콘서트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다수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

2) 상황

9월 20일 오후 4시 26분경, 미사경정공원에서 9월 23~24일로 예정된 ○○○ 콘서트를 위해 설치 중이던 높이 40m의 무대 구조물(철제 파이프와 발판으로 엮어 만든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날 하남지역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2.7mm의 비가 내리고 최대 순간 풍속은 7.8m/s를 기록함

3) 결과

- 작업자 9명 부상(중상 2명, 경상 7명)
- ○○○ 콘서트 행사 취소

4) 시사점

- 하남시는 9월 12일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대책을 논의하였으나 현장 작업에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21. 2023년 ○○○(전시컨벤션센터) 정전 사고

1) 개요

2023년 9월 1일, ○○○ 1전시관 전체가 정전으로 진행 중이던 3개 행사가 커다란 불편을 겪었으며, 참가 부스의 초음파 기계가 고장과 일부 홀에 에어컨 가동이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

2) 상황

9월 1일 오전 9시 51분, 3개 홀로 구성된 ○○○ 1전시관은 2023○○국제의료관광컨벤션, 2023○○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제20회○○국제음식박람회의 3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중 전체 정전이 발생함. 정전은 8분간 계속됐고 이후 전력이 복구됐으나 예비 발전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이유였음. 한 참가업체의 초음파 기계 고장으로 체험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전력 복구에도 2B홀은 에어컨이 재가동되지 않아 찜통 행사로 진행하게 됨

3) 결과

- 정전으로 3개 행사의 불편이 발생하고, 참가 업체의 초음파 기계 고장 및 일부 에어컨 미작동
- 인지도와 신뢰성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대응 부실로 안전 이미지 실추

4) 시사점

- 가장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은 전시컨벤션센터도 정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 제고
- 평소 철저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관리와 주기적 점검이 필요함



V

참고 양식

1. MICE 안전관리계획(안)
2. MICE 안전관리 전담조직(TF) 구성표
3. MICE 안전관리 회의록
4. MICE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5. MICE 행사 사고보고서

V. 참고 양식

MICE 안전관리 계획(안)

MICE 안전관리 계획안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주최/주관		
행사 주최 사업자(단체)	기관명	[대표자 :]
	주소	[연락처 :]
	총괄(안전) 책임자	성명 / 소속/ 주소 / 연락처
행사 주관	기관명	[대표자 :]
	주소	[연락처 :]
	총괄(안전) 책임자	성명 / 소속/ 주소 / 연락처
참가(참관)인원	연인원 명 (최소 : 명 ~ 최대 : 명)	
	1일 최고 참가(참관)인원 : / 최대 수용인원 :	
행사내용	세부 행사명	내용
특기사항	[내용 예시] - VIP/ 연예인등 주요 출연자 - 특수장지(장비)/특수효과등 사용 계획 - 관객(참가자) 특성 - 기타 프로그램 중 각별히 안전관리 대책을 요하는 사안	



MICE 안전관리 계획안				
행사일정	일자	시간	장소	행사내용
행사보험 가입내용				
행사장소 (평면도)				
주요 시설 (배치도)				
동선관리 (동선/대피로)				

MICE 안전관리 계획안		
안전관리 관리조직	1. 조직도 2. 안전총괄책임자(성명) / 연락처 3. 임무 및 위치별 담당자 / 연락처 3-1. 3-2. 3-3.	
비상(응급)시 조치사항	1. 신고 2. 화재진압 3. 대피 4. 응급치료 5. 안내(방송) 6. 비상 커뮤니케이션 ※ 분야별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명기	
안전관리요원	담당책임자	성명 / 연락처 / 담당업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	
	스텝 #6	
	스텝 #7	
	스텝 #8	



MICE 안전관리 계획안

	소속	성명	연락처	임무/위치	비고
비상연락망 (주최측)					
비상연락망 (주관사 및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분야(소속)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비고
	지자체				
	경찰				
	소방서				
	의료기관				
	기타				
기타 참고사항					

V. 참고 양식

◎ MICE 안전관리 전담조직(TF) 구성표

MICE 안전관리 전담조직(TF) 구성표

행사명		대표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최사		예상 참가인원 (참관객)	
실행사			
주소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이력			
성명	지정 연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겸직 구분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이력			
성명	지정 연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겸직 구분
	. . .		
	. . .		
	. . .		
	. . .		
[참고사항]			

본 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상기와 같이 안전관리 전담조직(TF)을 구성한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MICE 안전관리 회의록

MICE 안전관리 회의록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안건						
참석자 명단						
주최사			실행사 및 협력사			
소속	성명	서명(날인)	소속	성명	서명(날인)	
구분	회의내용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의결사항						
기타						

V. 참고 양식

© MICE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MICE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의견
		OK	Risk	n/a	
개최지 및 인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부지 이용 · 소음 민감/주의 시설의 인접 · 도로, 철도, 수로 · 공사 지역 · 약천후 및 자연 위험 · 경쟁 이벤트 · 지역 휴일/기념행사 · 교통 이용성 · 인근 편의시설 · 범죄 · 정치적 불안, 노숙자, 노점상의 존재 				
행사장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의 역사 · 장소의 접근성 · 교통, 의료시설로부터의 거리 · 개조/공사 필요 · 시설 인력 · 정책, 규정, 제약 · 안전 기록 · 인접 시설(예. 호텔) · 시설 소유권 · 법적 제한 				
행사장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을 이용한 접근 · 보행/차량 교차 · 입구 및 출구 · 안내 및 경고 사인 · 하역장 및 화물운송 접근 · 창고 구역, 화장실 · 소음 수준 · 낙하 위험(가장자리, 선반, 발코니) · 임시 구조물 · 주차시설(상태, 보안) · 주변 울타리, 장애물 · 통로, 복도, 계단 · 조명 · 좌석 상태 및 시야 · 노출된 장비나 기계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 및 문 (유지, 통제) · 조경(방해, 은신처) · 절벽, 낙하, 급경사, 고르지 않은 지형 · 침입(벌레, 쥐, 뱀) · 독성 식물 · 건물 돌출부 · 지하 배수로, 배수관 등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의견
		OK	Risk	n/a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 시스템 · 음식서비스 시설 · 전체 유지 및 청결성 · 환기시스템 · 물 관리 · 공기오염 				
보안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카메라, 순찰, 인력) · 보안 대응 시간, 절차 · 자물쇠/열쇠 유형, 배포 절차 · 객실 				
소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구(명확한 식별, 건전지 조명) · 화재안전시스템(연기탐지기, 시청각 화재경보) · 진압시스템(스프링클러 등) · 소화기(배치, 가시성, 최신 점검) · 화재경보의 소방부서와 직접 연결 				
비상대응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대응계획 · 대피 계획 지침 · 비상용 독립적 전원 · 조명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정전 대비 예비 발전기 · 대피소 능력 · 인접 비상구조반 및 대응시간(소방, 구급차, 경찰) 				
의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능력 및 장비 · 응급처치 훈련 인력 ·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 · 24시간 대응 의사 대비 				
행사장 규정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안전 점검 · 비상사태 계획 · 엘리베이터 점검 · 식음 및 주류 서비스 면허 · 건물 및 전기 규정 · 장애인 접근성 준수 · 기타(허가, 점검증명서 등) 				
규정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조례 · 흡연 조례 · 위생 조례 · 교통/거리 폐쇄 조례 · 임시구조물 시공 규정 · 특수효과 기준(레이저, 불꽃놀이) · 보험담보요건 				

V. 참고 양식

◎ MICE 행사 사고보고서

MICE 행사 사고보고서		
부상자 / 재산소유주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분류: <input type="checkbox"/> 관람객 <input type="checkbox"/> 참가자 <input type="checkbox"/> 스태프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자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 <input type="checkbox"/> 출연진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 관련 정보		
사고일자:	사고시간:	
사고위치: (정확한 위치 기록)	사고 유형: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사고 <input type="checkbox"/> 차량 사고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도난 <input type="checkbox"/> 재산 피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 분류: <input type="checkbox"/> MICE/시설 관련 <input type="checkbox"/> MICE/시설 무관 <input type="checkbox"/> 경상/경증질병 <input type="checkbox"/> 중상/중증질병 <input type="checkbox"/> 부상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경위(사고, 부상, 재산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피해자 부상 및 상태		
재산피해 설명		
조치사항		
<input type="checkbox"/> 치료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응급진료 이송	<input type="checkbox"/> 경찰 호출
<input type="checkbox"/> 치료 거절	<input type="checkbox"/> 환자요청 응급진료 이송	<input type="checkbox"/> 현장 해결
<input type="checkbox"/> 현장 의료처치	<input type="checkbox"/> 개인 차량에 인도	<input type="checkbox"/> 보고
<input type="checkbox"/> 병원 이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목격자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고서 작성자 정보		
작성 일자:	이름:	전화번호:
소속:	직위:	서명:
※ 본부 상황실용		
사고번호:	사고일자:	보고접수일:
행사명:	행사일자:	행사장소:



〈 참고 문헌 〉

- 고용노동부(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2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_____ (2023). 2023년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경기도(2015). 옥외 행사장 안전매뉴얼.
- 경찰청(2014).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산업기술시험원(2010). 공연장 안전 매뉴얼 핸드북.
- 문화체육관광부·한국PCO협회(2018).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소방방재청(2012).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식품의약품안전청(2011).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 신창열(2016). 이벤트 리스크 관리. 도서출판 청람.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202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 코엑스(2023). 등록업체 운영 매뉴얼.
_____ (2023). 전시장 공사안전관리 시스템 교육자료.
- 킨텍스(2020). 지정등록업체 안전교육.
_____ (2022). 킨텍스 행사 안전관리지침.
- 한국관광공사(2014). MICE산업 안전관리체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_____ (2023). KTO 종합 안전 매뉴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14). 가설무대 안전 가이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www.stagesafety.or.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www.kossis.or.kr.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www.haccp.or.kr
- 한국여행업협회(2023). 여행업 안전관리 가이드북.
-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22). 전시산업과 중대재해처벌법.
- 한국MICE협회·한국PCO협회(2020). 마이스(MICE) 행사 방역관리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2021).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 법령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 개인정보 보호법(2023.9.15. 시행).
- 경찰청(20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1.1.1. 시행).
- 고용노동부(2022). 산업안전보건법(2022.8.18. 시행).
_____ (20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
_____ (20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2.6.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2023). 공연법(2023.8.8. 시행).
_____ (2023). 저작권법(2023.8.8. 시행).
- 법무부(2023). 민법(2023.6.28. 시행).
- 보건복지부(2023). 장애인복지법(2023.9.29. 시행).

● V. 참고 양식

_____ (20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3.1.28. 시행).

소방청(20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7.4 시행).

특허청(20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3.9.29. 시행).

행정안전부(202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7.21. 시행).

_____ (20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3.9.15. 시행).

마이스(MICE) 안전관리 매뉴얼

발행월 2023년 11월
발행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TEL. 033-738-3000, www.knto.or.kr
연구기관 한국마이스관광연구소

본 매뉴얼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하며, 자료의 인용 또는 가공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명「마이스(MICE) 안전관리 매뉴얼(한국관광공사)」를 표기하여 주십시오.